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1993年 12月 8日(水) 午前10時12分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

1.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決算 承認의 件
2.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3.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決算 承認의 件(繼續) ——— 1 面
2.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繼續) ————— 1 面
3.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豫算案(平昌郡守提出) —— 23 面

(10시12분 개의)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한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

며 진행 하겠습니다.

1.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決算 承認의 件(繼續)
2.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繼續)

(10시 13분)

○ [redacted]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평창군 일반회
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상정 합니다.
본의제는 지난 12월6일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
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
가 있었으리라 믿으며 계속해서 심사토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신교선 전문위원님 2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問委員 辛致善~~ 신교선 전문위원
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
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검토의견 순으
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개요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규모및 내역
과 세출에 있어서 세출내역,이월금내역,
전용및 이용내역, 불용액내역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역,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은 353억4,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은 423억7,600만원, 이에따른
수납액은 421억3,900만원이며, 미수납
액은 2억3,700만원으로서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92년도 세입예산은 총353억4,594
만원이었으나, 실수납액은 421억3,887만
원으로서 67억9,293만원이 추가징수되었
으며, 추가수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80억9,400만원이었으나 147
억8,200만원으로서 180%가 징수가 되었
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총2억3,718만원으로서 93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은 지방세
1억5,664만원과 세외수입 8,054만원이며
지방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불납결손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및 내역에 있어서 예산
액은 353억4,600만원이고 이월액은
80억2,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33억
6,889만원이고 지출액은 372억6,600만원
이며, 익년도로 이월된것은 33억3,800만
원, 불용액은 27억6,5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출내역은 353억4,600만원이었으나 예

산성립후 80억2,3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433억6,889만원이며, 예비비사용은 총 1억4,625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장별 현액은 증감이 있으나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또한 3,697만원으로서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이증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5.9%인 372억6,600만원이며, 33억3,8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되고 27억6,49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은 총27건에 33억3,800만원으로서 그중 명사이월 2건에 2억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5건에 31억3,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입니다.

이월사업중 명사이월은 대화체육관 건립부지매입지연 1건에 2억원과 우수마을특별지원 상사업비가 1건에 690만원으로 대상지 확정지연으로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25건에 31억3,100만원으로 대부분 발주 지연및 공기부족으로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11건의 3,697만1천원이 전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 부족 10%해서 336만9천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 불능으로 시설비로 2,474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제16회 청백봉사상 수상자와 해외시찰경비에 198만8천원 향토인재 양성교육생 해외연수에 215만6천원, 인건비 부족분 7건에 대하여 471만5천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27억6,493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4%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 6.5%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지역개발사업비가 12억4,112만원으로서 약 8.6%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082만3천원을 공제하면 순불용액은 146억4,093천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3.3%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지출결정액은 1억4,624만6천원으로서 결정한 금액을 전액 집행을 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채무 부담행위액이 평창종합운동장 건립 마무리를 위해서 채무부담을 승인을 했고 사용부담을 하고 사용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9억6,10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9억5,664만원이며, 4,443만원이 미수납되어서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사용료 341만원과 과년도 수입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억9,312만원에서 8억629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 7,270만원은 상수도 확장설계용역비로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총 1억1,412만원으로 관리비 8,221만원과 지방채상환금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내역을 보면 평창상수도 확장설계 용역비는 예산액 9,600만원 중에서 7,3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익년도로 이월되고 2,300만원은 불용처리 된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은 결산

을 보면 20억3,25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8,475만원을 수납하고 6억4,780만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용자금 이자수입이 2억8,220만원, 용자금 회수수입 1,082만원, 과년도수입 8,9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9억4,916만원중 지출액이 13억4,694만원이며, 6억222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3,608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이 되었고

세출예산현액 3,669만원중에서 새마을 소득사업 일반용자금으로 3,000만원이 용자 되었고, 66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수입은 2억8,444만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억8,680만원중 지출액이 1억100만원으로서 8,5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억3,27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971만원을 수납하고 1,305만원이 익년

도 이월됩니다.

미수납액은 융자금이자수입 8만7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252만원, 과년도수입 1,019만원, 잡수입 34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1억755만원중 지출액 8,30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융자사업 융자금으로 지출되었으며 2,455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4억 8,702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이 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억8,781만원 중 지출액은 4억7,634만원이며, 1,147만원은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은 2억6,589만원으로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7억7,775만원중 지출액은 6,752만원이고 2억1,0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사업비 2억134만원, 예비비 82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3,146만원으로서 과오납 반납액 반환금 237만원을 제외한 1억 2,908만원이 전액이 수납되었고 세출 예산현액 1억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991만원이며, 7,081만원이 불용액, 불용내역은 관리비 168만원과 사업비 1,825만원, 예비비 5,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및 8개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444억3,355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1억3,2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5억6,565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17억8,02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447억 275만원이며 차인잔액 70억7,747만원은 93년도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690만원, 사고이월47억5,46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451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4,138만원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3.8%, 예산액대비 4.5%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353억4,5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3억7,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9.8%를 증액하여 징수결정했고, 실수납액은 421억 3,887만원으로 세입예산대비 67억9,292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보다는 2억3,718만원이 미수

납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 표이며 1년간의 재정계획이므로 세입, 세출 추계에 정확을 요하는 주요한 사안으로 증,감요인이 발생되면 경정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견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92년도 결산상 주요세입 불균형 예산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92년도 과다계상 주요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을 2,51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1,073만5천원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1,438만5천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징수비율로보면 42%가 됩니다. 공유재산매각대는 7%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부담금 5억 세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미수납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7억9,801만4천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1,363만5천원으로서 징수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아울러 예산액을 실제수납액보다 과소하게 계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도축세는 예산액 1,2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수납한것은 3,060만4천원이고 초과해서 수납한 것이 1,86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255%를 추가징수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할수 있고 예산을 계상을 할때 적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역시 도시계획세또한 6,300만원입니다만 3,000만원을 더 징수를 해서 148%, 사업장발생수입은 6,875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수납된것은 1억 4,600만원으로서 7,764만원이 추가징수가 되어서 징수비율이 21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상 1,3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는 9,1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초과수납액을 보면 7,800만원이라는 돈이 초과수납이 되어 무려 679%의 징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이 불균형한것은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치 않고 징수결정한 세외수입의 전입금이 6억5,833만8천원, 변상금이 123만원, 보조금의 기타 보조

금이 6,393천원등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해서 1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했어야 할 사항인데 안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중에 부담금 5억원은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징수결정및 세입예측이 불투명한 송정택지개발 분양금을 가공세입 추계하여 계상한 사례가 있고 세외수입중에 92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처분에 관한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입니다만 세입예산에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7%에 불과한 927만7천원이 매각처분된 상태이고, 세외수입중에서 과년도수입 7억9,801만4천원중에는 근로자 복지주택 수입7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징수한 실정이 결산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과년도 임대료등 1,363만5천원만이 징수되어 징수실적이 예산액 대비 1.7%에 불과합니다.

과년도 세입결산을 결손처분없이 이월하면서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수입중에 미수납액이 1억5,664만1천원이 전액이 이월되어 있으나 93년도 세입예산에는 9,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

92년도 세외수입중에서 미수납액은 8,053만8천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나 93년도 세입예산에는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대상물건은 강력 징수조치하고 결손처분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세원을 정리하는등 건실한 재정운영이 각별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353억4,595만원이고 91년도 이월액은 80억2,2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3억6,889만원인바 85.9%인 372억6,602만원을 지출하고 7.7%인 33억3,789만원은 93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27억6,493만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액에 비하여 지출 비율이 낮은것은 일부 보조금 예산이 연말에 확정 내시 되어 사고 및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와 계획된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회계년도내에 집행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부 계획에 의거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투자 하지 않음으로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 하였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견지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26건에 33억4,755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명시이월은 2건에 2억690만원, 사고이월은 25건에 31억4,085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농지개량관리 주요사업비는 2개 비목에 1,656만원이며, 91년도에 이월이 되었으나 92년도 결산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91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매년 많은 건수의 이월사업이 반복 발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1건에 3,697만원을 전용을 하였으나 의결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이라 하더라도 예산전용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지역경제비 상여금 200만원과 지역개발비의 정액수당 106만1천원은 후생복지비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1항1호에 있어 봉급에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이 포함되므로 이것은 봉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림관리 주요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2,474만원을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로서 시설비로 전용한것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비입니다만 이러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확실히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불용액은 27억6,493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6.4%가 발생하고 있으며 91년도 대비하여 증가 추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하여 보면

예산절감이 5억3,8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집행잔액이 2%, 예비비가 4%입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 20억2,500만원으로서 전체불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이 예산절감으로 인한 5억3,8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집행 잔액 20억2,59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자치 않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절감중에 나타난 불용액 중에는 27개 비목의 1억4,986만8천원은 세출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으나 전액 불용되는 등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사업이 완공년도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소요 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계상되지 않고 당해년도 사업으로 계상올하고 그다음에 가서도 계상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평창종합운동장시설공사라던지 송정택지개발사업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제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은 수

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전액 징수되어야 하나 3,412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고 도비보조금 4,500만원은 92년도 제3회 추경시 세입편성이 되었으나 수납 처리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세입결산을 과소 편성했고 융자금이자수입및 융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이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일반융자금용자로 설치목적은 다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에 비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설치목적은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에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현액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므로서 영세민 생활안정지원에 기여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고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되었으나 예산 현액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농공지구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유재산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관리의 대책이 요구되고 특별회계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페이지의 참고자료는 재산현황과 채무증가및 현재액 내역, 세입금미납 현황, 세입세출액 현금종류별 현재액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결산검토를 하면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다면 첫째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로는 결산상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를 수록한 설명서를 제출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단순한 실적

이나 자료가 아니고 예산집행에 의해서 성취시킨 긍정집행 효과라는데 착안을 해서 좋은 제도가 될것으로 믿기 때문에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1992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2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회계년도 평창군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7,178만4천원으로 동결기설해 응급복구제설장비 구입구매의 21건에 대하여 1억4,624만원 을 지출하고 잔액1억2,553만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구매와 작업비로 2,064만원고 도열병방제 농약대570만3천원, 우박피해농가 비료지원 225만2천원의 지출은 예비비 집행목적이 달성 되었으나 배상금 236만1천원, 퇴직수당 보족분 3,522만3천원을 수회에 걸쳐 사용한것은 기관운영의 기본적 경비이므로 해당과목에 계상함이 타당하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도민체전 출전경비, 도내일주역전 마라톤경비 및 환경행사에 7,570만2천원 을 집행한 사례는 예비비사용목적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며, 예비비 지출시 공무원순직장례비436만 5천원을 3회에 걸쳐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과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redacted]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3시42분 속개)

○ [redacted]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까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지출액,

차인잔액이 있는데 세출예산액에 지출액이 차인잔액이 맞습니까?

○ [redacted] 네 맞습니다.

○ [redacted]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은 얼마인데 그 차인잔액은 얼마인데 그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거의 차이가 나는데 다른 요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 [redacted]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고 세출예산현액이 얼마에서 지출액이 얼마다 그 차인잔액은 얼마다 라고 해야 이 내용을 알지 결산서 이것을 보고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redacted] 지출잔액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것이 차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익년도 이월금이 같이 포함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뒤에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결산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앞에서 보고 뒤에서 찾아보고 하도록 만들 이유가 없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 세출예산현액이

얼마에서 지출하고 나니까 그 차인잔액은 얼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월을 했다던지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합계밑에 세출결산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예산액이 9억3,178만7천원으로 되어있고 예산후의 증감액이 6,13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한것이 예산현액이 9억9,312만380원이고 여기서 지출원인행위해서 지출된것이 8억6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이월된것이 7,270만5천원이고 불용액이....,

○ **○** 아니 9억9,312만380원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합해서 이런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지출액이 8억629만3,410원을 빼면 그 차인잔액이 1억5천원이 아니고 1억8천원이 되어 하지 않습니까? 지출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차인잔액이 1억5천원이 아니라 1억8천원이 되어 합니다.

○ **○** 9억9,300만원은

현액이고 수납액이 9억5,600만원에서 차인잔액이 1억5천이고 1억5천중에서 사고이월이 7,200만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7억7천이 되겠습니다.

○ **○** 그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이월금은 어디다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수납액에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것이지요?

○ **○** 네 그렇습니다.

○ **○**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빼서 차인잔액이 나오는것이 맞는데 수납액에다 전년도 이월금 더한것이 세출예산현액이 아닙니까?

○ **○** 수납액에는 전부 이월금까지 포함이 된것입니다.

○ **○** 예산현액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그렇게 나오는데 세출예산현액은 어디서 나온 수치이냐는 얘기입니다.

○ **○** 예산액이 9억3,178만7천원에서 징수결정된것이 9억6,100만원이고 총수납된것이 9억5,663만6천원이 세입총결산입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444만3천원이 있고

이 미수납액 빼고 맨 금액에다 예산성립 후 전년도에 이월된 613천만원을 프러스 해서 9억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이월된것을 다시 예산에 세우면 그만큼 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기 위해서 순계만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redacted]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다 그 내용을 내 놓아야지 실무를 하는분들도 오랜시간 찾는데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 계수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심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redacted] 내년도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사항을 명시할 것입니다.

○ [redacted]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8,053만8,240원이 미징수 금액인데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세외수입에 농지세, 국유재산임대료, 등이 있는데, 국유재산임대료를 왜 못받습니까?

○ [redacted] 국유재산임대료가 상당히 미납이 많습니다. 2년동안에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횡계

인데 횡계가 투기바람이 불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임대료를 산정할때 과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2 - 3배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납부를 안해서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금년에 공시지가도 낮추어서 내년부터 적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납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redacted]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매각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팔리지 않아서 그런건데 팔리지 않아서 7%밖에 안되었고, 기타재산임대료라고 해서 48%를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도 예산액이 1억2천인데 5,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기타재산임대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redacted] 이것이 결산서도 그렇고 작년의 세입장부를 하면서 잘못정리를 해서 착오가 생겼는데 송정택지에서 지역주민들이 살면서 땅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사는것을 그것을 세입을 안잡고 그것이 여기에 기타수입으로 들어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redacted] 알았습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결산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22페이지 92년도 결산상 주요세입의 불균형예산의 내역,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던 부분이나 과소하게 계상했던 부분.., 왜 이렇게 예산을 못할 정도로 편차가 생기는지 그원인이 무엇입니까?

○ [redacted] 농지세 같은 경우에는 농지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가 이렇게 되었다가 농지세 감면에 의해서 세금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고,

○ [redacted] 감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redacted] 농민의 세부담이 낮아지다 보니까 농지세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왔습니다.

○ [redacted] 공시지가로 세를 부과했다가 너무부담이 될것 같아서

감면이 된것입니까?

○ [redacted] 농지세는 그런 것이 아니고 U.R 대책으로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지세가 기초면적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작년 92년도에 기초공제가 높아지다보니까 저희관내는 영세농이기 때문에 농지세가...., 예산은 1,400만원을 잡았습시다만 실제 470밖에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 [redacted] 결과적으로는 지가 현실화 관계때문에 높게 책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감면을 해준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redacted] 왜 관계가 없습니까? 지가하고 농지세하고 왜 관계가 없습니까?

○ [redacted] 농지세는 수확량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공제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횡계분들로 인해서 계속 채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별도 만나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栗 委員長** 국유재산 임대료는 몇년 이내에 처리가 안되면 나중에 받을 수 없는것이 아닙니까?

○ **財務課長 三木 課長** 저희가 5년으로 잡고 있는데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을수 있는것은 불용처리를 안하고 계속 과년도로 이월을 해서 납부촉구를 하고 체납 처분이라던가 하는것으로 일소를 하고 있습니다.

○ **三木 課長** 아무래도 이문제는 2-3년 세액이 겹치게 되면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면 받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그때 받아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2-3년 중복이 되면 받기가 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과장님 국유재산 임대료는 철저하게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 **財務課長 三木 課長** 그래서 저희가 12월10일날 부읍면장하고 재무계장을 합동으로 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체납액 일소 대책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 **三木 課長** 너무 과소하게 계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三木 課長** 과소하게 계상한것은 예측을 그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이상 세입도 예측을 해서 하는데 세입이 늘어나면 추경때 이것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조정작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三木 課長** 왜 못합니까? 이것은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 **三木 課長** 할수 있는데 인력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조절을 못한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입목표를 조금차이 나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차이나는것은 조절을 할려고 합니다.

○ **三木 課長** 그리고 세출예산에 예산편성치 않고 징수결정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것은 왜 그런 현상이 옵니까? 일단은 세출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준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징수 결정을 하는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 **三木 課長** 세출예산에 편성

을 안하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22만9천원
을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을 안잡고
그렇게 변상을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징수결정
을 해서 그렇고 ,

○ [redacted] 이런문제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수 있는 재원도 있고 여러가지 여력이
있는데도 그런것은 다 제쳐놓고 현찰만
가지고 합니까?

○ [redacted] 지금까지 세입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동안에 손발
이 조금 안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
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redacted] 지난해에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일이
많습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이 되면 그때는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거론이 되고 이래가지고 행정에 발전을
기할수 있겠습니까?
이런일이 다음 기회에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25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
는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
엇입니까?

사업을 한다고 동절기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공기문제 등등해서 이
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급
적이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 [redacted] 이월중에는 사고
이월은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이월이 되
는 것이고 사업발주가 늦게 된것에 대해
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각실과소
에서 명시이월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사업발주가 늦어지니까
사업발주가 늦어지는데 대한 문책이 두
려워서 명시이월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
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
니다만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사고이월을
시키면 사실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실무진에서 확실
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세출부서에서는 계속 각부서에 증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교육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의회 승인을 안받고 쉽게 해볼려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명시이월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꼭잡 하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네 알겠습니다.

○ [redacted] 그다음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6.4% , 그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74%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돈을 주고도 못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왜이렇게 불용액 처분을 많이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redacted] 불용액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강원도의 전문업체가 5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같은면 90%이상 낙찰이 되

었는데 지금은 경쟁이 붙어서 85 -86% 이정도 내에서 차액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하고 각과에서 집행은 안할것은 예산부서에 목록을 내어서 그것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그런것이 유기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연말에 가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redacted] 아니 그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한지붕에서 살면서 예산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쓰지 못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문제가 상당합니다.

예산만 많이 세우면 무엇합니까? 예산도 집행을 못하면서 사장을 시켜 가면서 이런식으로 할려면 살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던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거론이 되지 않도록 적극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예비비 문제인데, 예비비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체육행사 같은데에 7,500만원씩 예비비를 잘라 쓰고 여기 보면 서무관리도 그렇고 특별한 관련법안도 여기 있는것으로 아는데 예비비를 쓸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예비비를 써도 됩니까?

○ [redacted]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항목에 조금 위배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redacted] 91년도에도 생활체육대회인가 예비비에서 쓰셨죠? 도민체전 같은경우는 년중에 상반기에 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행사비는 추경전에 집행할일이 있어서 썼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추경전에 쓸것이 있으면 대충 감을잡아서 당초예산에 잡아서 예산을 쓰고 후반에 필요한것은 추경에 계상해서 쓰는것이 바람직 하지 상반기 쓸예산을 뺀히 알면서 예산도 편성안하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년말쯤 가서 예비비를 꼭 써야 할 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재해는 9월달에 제일 많이 옵니다.

5월달에 예비비를 잘라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redacted]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수당 관계, 이관계는 물론 임기가 만료된 기간을 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실제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미화원이라던가 특히 잡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그만두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까지 지출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인가에 의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어떤일이 생겼을때 그것으로 보상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것, 미화원들 퇴직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300정도 되는데 단기 사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고용이 아닙니까?

어떻게 고용하는 것인데 퇴직금이 이렇게 나갑니까?

미화원 직종이 무엇입니까?

본군에서 잘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월1일부터 채용을 해서 12월31일 해고하는것으로 하고 그다음해에 1월1일 또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노동부에 지적을 받아서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단기고용을 시켜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도 일용인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것이 아니고 , 예비비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왜그런가 하면 퇴직하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퇴직한다고 하고는 안하거든 그냥 근무하다가 한달이나 20일전에 난 그만둔다고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기준에 의해서 일반 다른 부처에서도 이사람들에 대한 조직을 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하는 곳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인원이 되면 10- 15인이상인가 되면 공제를 해야 합니다.

봉급에서 기본급에 의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50% 공제하고 50%는 군비에서

적립을 하고 그랬다가 퇴직할때 퇴직금을 산정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냥 있다가 퇴직한다고 하면 계산을 해서 주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redacted] 이치옥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에 대하여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93년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지 못했고 94년 이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지출은 없을것입니다.

○ [redacted]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예산낭비 입니다.

본인한테 50% 받아야 하는데 , 하나도 안받고 있다고 예비비에서 주었기 때문에 ,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것입니다.

○ [redacted] 예비비의 자료에 보면 교육홍보계장 순직장례비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항목으로 세번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비를 쓸수 있는 것입니까?

○ [redacted]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그런 예산 지출,

○ [redacted] 그런데 같은 날짜에 같은 항목으로 세번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것입니까?

○ [redacted] 지출은 세번나뉘서 한것은 장의비 준비비하고 목이 다르게 집행은 하다보니까 목이 다르기 때문에 세번 나뉘서 했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사업이 완공년도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redacted] 지금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것이 없습니다.

○ [redacted]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당년 당년 예산계상해서 추진해 왔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보통 송정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당년에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것은 몇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야할 사업인데 그러면 계속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의회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식으로 한것이 없습니다. 먼저 예산을 올려놓고 그때 물어보면 무엇 할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설득을 시킬려고 하시니까 이해도 안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을 도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것이 3년이면 3년의 세입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비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혹시 하다가 못하고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예산제도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런 장기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계속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에서 23가지인가 지적이 되었는데

처리사항을 보면 처리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처리사항으로 내놓은것인지 한가지만 예를들면 채권및채무관리사무 처리소홀하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했다고 하는것이 채권및채무 관리대장에 비치기록의 미비로 현황파악이 곤란하나 법정서식및 대장의 비치로 업무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권하고 채무는 살림살이에 중요한 핵인데 이 관리대장이 없이 가정집에서도 누구한테 얼마꾸어주었는데 얼마를 빌려왔는지 해놓는데 이것을 안해 놓았다고 지적이 되면 "하도록 조치 하겠음"이 아니라 조치한 후에 처리사항이 되어야지 "조치하겠음." 하는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것이라는 얘기밖에, 이것이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할것이라고 하는것과 했다고 하는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대장을 즉시 만들어서 관리할수 있는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할것이라고 하는것인데 처리사항은 반드시 시행된것을 처리사항이라고 하지 어떻게 할 예정이다 ,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처리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되는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얘기를 하면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서 작성을 할때에 세입세출예산액이 나오는데 첫째는 제가 감사위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용태 위원, 금년에는 이치욱 위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수치가 맞지 않아서 시정해오라고 해서 검사하면서

수치를 맞춰가지고 하는검사 그런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전과같이 도에서 전과같이 검사를 한다면 숫자조차 안맞추어 검사를 받겠습니까?

그럴때마다 답변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3년 연속 이러한 사례를 해놓고도 그렇게 안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까?

지도를 했어야지 시정이 되지 않는것을 "하겠습니다." 할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처리 사항이냐는 말입니까? 미결사항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미결사항입니다.

23가지 지적한 사항을 전부 이런식으로 처리사항해서 완결조치 된것처럼 해놓고 결산검사에 대한 인정을 해서 종말을 지어달라고 하게 되면 인정할수 있겠습니까?

○ [redacted] 주위원님 지적하신 채권및 채무관리 사무처리소홀에 대해서 이것은 대장이 전혀 안되있는 것이 아니고 대장이 되있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대장하고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것은 그것을 하고 차후부터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redacted]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99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38분 정회)

(3시00분 속개)

○ [redacted]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平昌郡守提出)

(3시 00분)

○ [redacted]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전 92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 습니다.

지금부터는 9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알려 드리겠습 니다.

심사는 예산의 기능별 편성순서대로 소관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순서대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기획실장입 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94당초 예산안 개요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평창군예산안개요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89억1,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4.8%가 감액 되었 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8억7,100만원 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3%가 감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3,900만 원으로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지방 양여금 사업과 공유임야관리사업 특별 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조치됨에 따 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1.9%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7억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 고 세외수입은 44억6,800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75억6,100만원 으로서 지방교부세 내시가 미확정됨으로 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반면에 보조 금은 86억9,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54억4,400만원과 도비보조 금 32억5,300만원을 계상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할때 7,600만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97억9,200 만원, 물건비가 60억500만원, 이전경비가 41억6,200만원, 자본지출이 148억2, 900만원,보진재원이 3억9,200만원, 내부 거래가 4억7,600만원, 예비비가2억1,5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드린 94년도 당초예산안이 승인의결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고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 ~~專門委員 申某~~ 전문위원 신고선입니다.

1994년도 평창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89억1,000만원입니다.

이예산은 93년도 예산 517억4,200만원에 비해서 75%에 불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사업과 공유임야관리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요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계별 전출금 4억5,000만원을 공제하면 예산순계 총규모는 384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3,9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8억7,1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88%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방세는 57억5,1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8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신장율은 117%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44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2%에 불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에보고드린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었으며 감소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감소로 해서 예산이 크게 감소되었고, 자주재원율은 93년도 40%에서 94년도에는 28% 밖에 되지 않고 전년대비 12%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세입항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있어서
경제성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기본적경비는 55억
166만원이 증가 하였고 사업비는
103억2,915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50억4,544만원인 12%가 감소된 예산
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94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총17억2,582
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억8,847만원으로서 송정택지조성에
원금 3억원과 이자 1억6,400만원,
청사정비기금의 원금 6억4,400만원과
이자 1억2,864만원, 평창하수도사업의
원금 2억7,984만원과 이자 1억2,225만원
이 계상이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1억3,735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2억4,322만원, 주택사업
8억5,86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550만원을 상환하며, 상수도특별회
계 2억7,984만원만 균비에서 부담하고
8억9,413만원은 원무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93년도 계상예산증에서 94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은 4건이며 그내용은
지방세 전산화 운영 컴퓨터 구입 및 설
치공사비는 9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전산기 심
의 결과 불가 통보에 따라 이월된 사항
이고,

평창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비는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착공시기 미
도래로 , 공설묘지조성 사업비는 93
년도 제1회 추경시 계상되었으나 국토
이용계획 변경과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94년도로 각각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
비해서 43%입니다.

예산액으로 말하면 17억7,269만원이 감
소 되었고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3억7,662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6,494만원이 증가 하였고 사업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3,896만원, 도비보조금이
5,710만원이며, 지방채는 3억5,000만원
이 편성되었으나 93년도 대비 5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비는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비 9억4,232만원과 지방채상환 예산으로서 2억4,32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8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4%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예산중에서 1,302만원은 군비이고 기타 예산은 주택용자금 회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전년대비 3,2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군비인 1,302만원은 수용비및 징수여비로 책정이 되어있고 8억5,886만원은 지방채상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1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89%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합 하였으며, 세입은 용자금 이자수입 23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2,812만원, 용자금 회수수입 1억1,58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전액이 일반소득특별지원사업 용자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5,200만원

으로서 전년대비 124%의 신장율입니다.

세입예산은 용자금 회수이자수입 24만원과 이자수입 15만원, 군비전입금 252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4,8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으로서 4,040만원은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원 인건비이며 의료보호사업비와 대불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29%밖에 되지 않으며 세입예산은 용자금이자수입 279만원과 용자금회수수입및 미수금 4,0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운영관리서식인쇄 20만원과 전액 영세금 생활안정기금 용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7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입예산은 용자금 이자수입 3,550만원과 93년도 이자발생수입 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순세계 잉여금 839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환경조성 233만원 지방채상환360만원과 예비비 900만원

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드린 예산검토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358억7,100만원과 특별회계30억3,900만원을 포함해서 총389억1,0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입금 4억5,500만원을 공제하면 순계 총규모는 38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신장율이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 세입중 송정지구택지매각 77억원과 도비보조금 10억1,000만원이 감액되므로 해서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추진 일반회계 전입금 4억2,4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5,300만원이 감소된데 주원인이 있고,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자주재원율은 28%로서 지난해보다 1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58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2%가 감소 하였고 전년도 대비하여 장별로 분석하면 , 지방세가 57억5,100만원으로 17%가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4억6,800만

원으로 58%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인 175억6,100만원만이 계상 되었으며, 보조금은 77억3,000만원으로서 4%가 신장이 된 상태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8%가 신장된 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주민세가 소득세활및 법인세활 증가로 인해서 1억5,4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재산세가 건물과표 및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1억3,700만원, 자동차세가 차량 증가로 인하여 2억9,200만원, 종합토지과세가 과표를 19.6% 인상함으로 해서 3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1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9%인 62억7,1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원인은 '93예산에는 송정택지개발분양금 수익금 78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번 예산에서는 77억원이 편성 제외되었고, 수수료 수입면에서 1억1,000만원이 감소 되었고, 반면에 군청앞 택지조성 부담금 6억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해서 13억7,100

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1,000만원
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질별 예산의 기본적경비는 204억
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점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51억6,300만원으로서 예산
규모의 42%입니다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나 감소하였고 기타경비는 8억
400만원으로서 2.2%로 전년대비 1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7% 증가하였
으나 이는 전년도 각실과와 읍면에서
관리하던 인건비를 일괄 편성하고
지방채 차입금 상환 5억8,000만원, 평창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비 5억원과 새마
을사업및 지역안정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행정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47%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대비 64%로 2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위생급수로
위한 간이급수시설인건비와 시설비로
9,160만원, 의료장비구입비 2,20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
으며 주요사업내역은 고냉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8억3,000만원, 기계화전업
농육성에 4억200만원, 기계화영농단육성
에 9,400만원, 농기계구입비지원 3억
2,300만원, 농촌지도소청사 증축사업비
1억2,9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등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전년대비 38%로 저하가 되
어 있는데 81억4,500만원이 감소가 되
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평창,대화,도시계획지적
고시에 1억원, 택지조성 6억300만원 ,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3,900만원
주택개량 2억3,300만원, 부엌개량및 특
육탕개선에 3억5,200만원, 화장실개량
에 1억3,800만원, 경지정리사업 47억
6,0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 4억원,
교량가설 3억1,500만원, 군도유지관리
2억6,300만원, 도로정비 3억원, 황계
침수지구정비 1억4,000만원, 농어촌마을
포장 11억, 수해복구채무부담 3억3,400
만원이 주요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51%로서 1억7,300
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내역은 일반
민방위관리 1억4,400만원과 민방위시설

관리비 2,600만원, 소방행정비 1,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운용 방향에 따라서 92년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폐지가되고 일반회계에 편성되며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금고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이 될것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13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가 감소하였고,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사업비 9억4,200만원, 지방채상환에 2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8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가 증가하면서 군비 1,300만원은 수용비 징수여비이며, 지방채 상환을 위한 8억5,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2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가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금고통.폐합함으로써 인하여 증가 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용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5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가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보조금이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인건비와 의료보호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용자금 회수수입 회수지연에 기인되어 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용자금으로 세출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70%가 감소된 상태이고 감소요인은 용자금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한데 있으며, 농공지구 환경조성과 지방채이자상환금 예비비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릴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Redacted]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재무과장 입니다

'94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94세입예산액
증감분석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액은 35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50억4,500만원이 감되었
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57억5,100만원으로 전년
도보다 8억6,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는 3억6,500만원
으로 1억5,4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소득세활및 법인세활 증가가 되겠습니
다.

그다음 재산세는 4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7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건물과표증가및 신축건물 증가
에 따라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8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2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차량대수가 92년
4,900대에서 6,200대로 증 되었습니다.

농지세는 200만원으로 역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공제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
이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장평
도축장이 개설됨으로 해서 소 도축두수
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
다.

담배소비세는 21억4,300만원으로 일단
전년도보다 1억7,6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배소비량
이 감소되기 때문인데 담배소비세가 27%
인상이 되면 이것은 추가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4억5,200만원으로 전년
보다 3억4,500만원이 증 되는데 이것은
토지과표인상을 해서 과표인상이 19.6%
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현실화율이 22.7%입니
다만 내년도는 27.1%로 상향조정이 됩
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1억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
이 증이 됩니다.

이것도 건물신축및 토지과표가 증가되
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1억3,4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에 의한 종업원활동과표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을 더 증감을 했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자진납세품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총 44억6,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2억7,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1억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일제 조사에 따른 무단점유분색출로 저희가 타협을 할려고 합니다.

시장사용료는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2,9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진료수입의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현실화 하다보니까 세입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수입으로 1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증이 되는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8억1,6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6,0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등록세가 감이 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5,200만원으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년보다 5,000만원정도 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송정택지매각과 관련이 되어 내년에는 재산매각이 적습니다.

이월금은 9,000만원, 부담금 6억은 평창택지조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7,300만원인데 전년대비해서 1억4,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목욕탕운영수입및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증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6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억1,500만원이 증된 것인데 이것은 송정택지매각분 6억2,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5억6,100만원, 보조금이 80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억6,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5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53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7억7,000만원이 증됩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6,510만원인데 이중에서
주민세중에 균등할이 2,520만원, 소득
할이 3억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4억5,40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세는 8억9,7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소형승용차가 1,195만원, 소형
승용자동차가 7억4,396만6천원, 기타
소형승용차가 1,580만원, 승합자동차가
3,832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장에 화물자동차가 8,6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용 , 비영업용을 전부 포함
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2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에서 4,800만원, 담배
소비세는 국산, 외산을 합쳐서 21억4,300
만4,16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4억5,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중에 도시계획세인데 도시계획세
가 1억3,500만원, 사업소세가 재산합과
종업원할 합해서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1억2,100만원
인데 이중에서 주민세 80만원 , 재산세
2,000만원, 자동차세 1,500만원, 종합
토지세 7,700만원, 도시계획세 800만원
공동시설세 2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46억6,838만2천원입니다.
경상적 수입으로 28억3,270만5천원인
데 이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1억7,294
만5천원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
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3,359만3천원
인데 순수한 국유재산이 3,248만4천원
이고 도유재산임대료가 11만9천원이 되
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총1억3,935만
2천원인데 그중에서 균유잡종재산 임대
료가 1억2,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균유재산임대료 공유임야분입니다.
이것이 총 1,8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 시장사용료
입니다.

6개시장에 있어서 177만4천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5억2,941만원인데
이중에서 광공업 수입을 3억8,782만원
을 잡았고 증지수입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장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8개
읍면에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4,184만원을 징수를 하게 되겠
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억5,988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골재낙찰차액이 1억5,781만원
농촌지도소 예찰담 정조매각이 136만
6천원, 농촌지도소 소득작목 예찰포
부산물 매각이 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18억1,669만원인데 이중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9억4,890만원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4억5,210만원, 등록세가 4억
1,340만원, 면허세가 2,070만원, 소방
공동시설세가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과년도 수입이 4,200만원을 잡았

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총 8억6,779만원을 잡았는데 하천골재
징수교부금이 1억5,781만원, 항결핵제
보급이 60만원, 피임약제보급이 60만원
폐천부지매각이 7억870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을 감
해서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이자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은 3억3,700만원을 내놓
았습니다만 전액 팔리지 않기 때문에
1억3,000만원만 확실한 부분만 잡았습
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
부담금으로 군청택지조성부담수익금 6억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12만원을 잡았
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수입에 4,75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1억2,605만8천원을 잡았습
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6억4,200만원인데 이중
국공유재산임대료 2,000만원, 이중 폐기

물 수수료 200만원 송정택지매각 6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지방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법정교부세 175억6,1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장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0억9,091만5천원으로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50억786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에 대한 내역은 각실과소에서 심의시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는 총 30억8,304만9천원으로 이것도 각실과소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합계는 358억7,1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치욱 위원입니다. 8페이지 농지세 세입이 왜이렇게 적습니까?

○ 농지세는 농촌

의 세를 경감하기 위해서 기초공제액이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농지세를 내는분이 몇분 안되기 때문에 매년 줄어서 내년에는 200만원밖에 세입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 특수한 농작물을 경작하면 경작해서 성장해서 수확하는데 대한 세금받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U.R대책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께 도움을 주기위해서 기초공제를 높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농지세를 내는분이 몇분밖에 안됩니다.

○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탄도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던데.. 인정과세, 산업계장이 조사해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니까?

○ 농사를 면적과 소득을 해서 소득내에서 기초공제를 해주고 나니까...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시장사용료를 성의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받고는 합니다.

한사람한테 100원도 받고 200원도 받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받으나 마나 합니다.

○ 시장사용료 문제는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 폐천부지 매각, 왜 미탄은 안팝니까? 다 있는데 미탄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천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불평이 대단합니다.

왜 미탄면만 안과는 것입니까? 조사해서 도에 보고한다라고 해서 91년도 인가 제가 질의를 했더니 92년도에 다시 공고를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천매각 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시장사용료 징수에 어떤면이 200원이고 어떤면은 100원인데 시장따라 다른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은 평창과 대화 진부는 큰장은 조예상 2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적은면은 100원씩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면세가 적다고 해서 이것도 덜 받습니까?

○ 장사가 덜된다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김종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하천골재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골재 징수교부금은 3억1,500만원을 잡았는데 도의 50%하고 저희 50% 잡아서 1억5,700만원을 잡았는데 각종 공사를 하다보니까 골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골재를 많이 해서 경영소득 차원에서 골재를 많이 생산해서 골재징수 교부금도 받고 채취수익금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17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이것은 토지입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네 토지입니다.

○ 金鎭鎭 토지이면 현재 농사를 할수 있는 토지이겠지요.

○ 財務課長 李永德 농사할수 있는 토지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 金鎭鎭 그런데 평창군내에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관리계획 승인 신청한것이 3억3,700만원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시다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예로봐서 다 안팔리기 때문에 1억8,000만원정도는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 金鎭鎭 그러면 금년도에 조사를 했을때에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알고 있는데...

○ 財務課長 李永德 그분들을 합계한것이 총3억3,700만원입니다.

○ 金鎭鎭 그사람들이 다 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30%내에서 했습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네,

○ 金鎭鎭 알겠습니다.

○ 金鎭鎭 곽문춘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민세에 보면

균등할에 법인이 있는데 93년도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법인에 86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올해 290업체가 나왔습시다 그러면 210개업체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전년도에 86은 개인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개인중에서 소득이 3,000만원이상되는 분은 법인으로 들어가서 290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 金鎭鎭 수수료 수입에 보면 일반환자가 1,000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입원환자도 360명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이관계는 의료원 소관인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의료원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鎭鎭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卍의 가격입니까?

○ 財務課長 李永德 맞습니다.

○ 金鎭鎭 도암을 보면 卍당 29만원인데 그럼 한평에 87만원이 나옵니다.

송정택지조성을 해놓고도 평당 40만원이

되는데도 안팔려서 문제가 되는데
폐천부지를 87만원에 살사람이 있을것
같습니다.

○ [redacted]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이렇게 잡은 것
입니다.

○ [redacted] 하천부지나 폐천부지
를 임대하거나 점유하고 쓰는 사람들은
가장 서민들인데 이것 판다고 해놓고
평당 87만원씩 내라고 합니까?
실현성이 있는것을 예산 세입에 잡아야
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redacted] 그런데 이 황계
지역이 한동안 부동산 부기때문에,

○ [redacted] 과장님 부동산 부기
부기 하는데 당초에 감정을 하고 할때
에 잘못 되었습니다.

외부로 떠도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었
지 실거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합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어야지 이런 상태로는
못됩니다.

어느 적정선에 넣어서 매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redacted] 그래서 금년
공시지가를 금년에 낮추었는데 그것도

올라가 있는것을 한꺼번에 몇%이상 낮추
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낮추어 가고 있습니
다.

○ [redacted] 공시지가라고 하게
되면 군에는 읍소재지가 공시지가가 비
싸도 사게되겠지만 읍은 8,000원이고
이 공시지가가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세입을 잡던 세출을 잡던 실천가능한것
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것을
이렇게 판다라고 세입에 잡아놓은것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 [redacted] 이것이 전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redacted] 거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평창, 방림,
대화는 조금 싼편이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redacted] 평창,방림 같은
경우는 대지가 아니고 하천변에 있는
전.답이고 비싼것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그 지역주민
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 [redacted] 그런데 그분들
은 폐천부지이니까 팔아달라고 하는데

해서 감정을 하면 가격차이가 나니까 안팔리고....,

○ [redacted]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살사람들과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뜻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살사람은 꿈도 안꾸고 있는데 예산만 올려놓으면 지난해 같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지난해 한건도 못팔지 않았습니까?

○ [redacted] 도안은 밭도 비쌉니다.

어느정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 [redacted] 송정택지매각 6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77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5억이 사업비고 22억이 수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6억2,000만원을 잡은 경위를 얘기해 보십시오?

○ [redacted] 6억2,000만원을 잡은 것은 정리추경에 여기서 일부를 금년예산에서 감을 하고 내년에 이만치 예산에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93년도 정리추경때 감하고 남는 가격이 이 금액입니까? 송정택지 다 팔았을때 94년도 남는예산이 6억2,000만원 이라는 말입니까?

○ [redacted] 송정택지 매각은 현재 당초예산에 6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시다만 정리 추경에 송정택지 93년도 최종 예산에서 송정택지분 세입을 10억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 세출도 경상비와 사업비의 절감분을 10억을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만큼은 내년 94년도 사업을 위해서 다시 인정해 주십사 하고 세입에 계상을 해 놓았습시다.

그래서 1차적으로 6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앞으로 예비비라던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도비보조사업도 총당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정도 삭감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10억정도를 계상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시다.

○ [redacted] 그러면 6억2,000만원만 계상에 올리고 3억8,000만원은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까?

○ [redacted]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분명하게 정리추경에서 10억을 삭감하는 의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삭감이 안되면 예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잡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 [redacted] 93년도 정리 추경에서 분명하게 삭감하고 다시 10억분에 대한 예산을 94년도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redacted] 그리고 이치옥 위원께서 농지세를 말씀 하셨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흉년이 드는 해가 있고 풍년이 드는 해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농지세를 감해주시는 것은 바람직 한데 농민이 아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 리나 군쯤에 소도시에 사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계에는 관련이 없는 농사를 해도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사람들은 몇만평씩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본업외에 부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사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람들로 인해서 농촌의 인건비도 올라 가고 농지황폐화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들을 집중 출하를 해서 가격이 폭락되는데도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 한테 농지세를 많이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는데 그런사람들 한테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사항은 이장님들한테 통하면 잘합니다. 그런사람들을 찾아서 인정과세를 하시면 상당한 농지세를 걷어 들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사람들이 농업을 하는것도 규제가 되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순수한 농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었을 경우 앞으로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사람들한테 농지세가 더 부과가 될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 [redacted] 지금 인력가지고 거기까지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분 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 [redacted] 그런 사람들은 농지세도 한번 안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것

입니다.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것은 이장님들이 협조를 잘할 것입니다.

꼭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광문춘 위원입니다. 기타수입에 목욕탕 운영수입에 1억2,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복지회관 목욕탕하고 거기에 예식장 운영수입 이런것을 모두 포함해서 잡은 것입니다.

○ [redacted] 아니 거기에 대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올수가 있습니까?

○ [redacted] 전년대비해서 증가추세를 잡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 [redacted] 1억얼마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아마 1천만원도 힘들것입니다.

○ [redacted] 이것은 목욕탕별하고 월별 금년 세입된것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redacted] 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한후 16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4분 속개)

○ [redacted]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소관 예산안과 유관기관 지원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특별관리는 본청및 읍면공무원 487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로 88억697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행정자료실 관리요원 인건비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6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및 업무추진비는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평창연감 제작비와 관서당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부등 총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서 제작과 심사분석 평가보고서 제작, 투자사업 심사분석및 현지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현지확인 여비로 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을 운영중 시군구 예산운영 공통경비는 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운영 업무보조 인건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공무원교육여비,

군정시책 업무수행여비와 군정수행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및 군정수행 유공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그리고 국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추진경비 내역으로서 군정현황 보고서 제작과 업무보고서 제작등 7건에 1,350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중 법제및 소송관리에 대한 경비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문 변호사 수당과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그리고 관보보급료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등에 대해서 3,0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 운영비로 여비및 배상금등에 1,5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통계연보 발간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등 4건에 83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평창군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2,400만원은 공보실 소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

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예산은 5억8,800만원으로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1억6,400만원과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유관기관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수행유공자 단체보조금이 1억과 군정수행유공민간 단체 보조 1억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수행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예측하지 못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교육이라던가 회의가 1억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 정액단체가 아닌 일반단체 교육에 1억을 계상...,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지요

○ 그외에 무공수공 자라던가 정액단체가 아닌 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상되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 이치욱 위원입니다. 본청및 읍면공무원 인건비 487명밖에 안됩니까?

600명이라고 하던데.

○ 여기서 말씀드린 인원은 읍면에....,

○ 알겠습니다.

경비내역에 보면 인건비 중에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급이 40몇억인데 상세히 볼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제시하시면 안되 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규공무원만 있는건데 기획실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없습니까?

○ 네 없습니다. 41페이지에 나옵니다.

1사람입니다.

○ 알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여비 1억 3,500만원, 이것은 평창군 공무원들이 교육가는 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까?

○ [redacted] 도나 중앙에 교육가는 공통적으로 과에서 관서당 경비 외에 도의 지시에 따른 교육차출에 의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 [redacted]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 [redacted] 각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 지원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도서관 운영비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에다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이돈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redacted] 이것은 도서관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이것은 공공성을 띤 국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교육청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교육세를 별도로 목적세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것 까지도 교육청에서 안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 [redacted] 이것은 어떠한

진흥입니다.

법이 아니고, 진흥은 육성해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으로 육성을 해주어서 어느 계도에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흥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 [redacted] 평창군 재정사정도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해도 시급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redacted]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책에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근간에 향토인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육성을 하면 그지역의 인재도 육성할 수 있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법상 정책상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dacted]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법에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사업자체가 보람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평창도서관을 건립해놓고 운영실태를 보면 밤 늦게까지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할수만 있다면 장서를 구입해서 더 지원해 주고 싶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관리비, 인건비 모두 포함하고 일반사업비 해서 인건비, 관리비가 몇 %를 차지합니까?

○ [redacted]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예산중에 판정보비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 [redacted] 지금현재 50%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redacted] 지침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redacted]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현황이라고 내놨는데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자료 : 끝에 실음)

○ [redacted] 작년에 비해서 50%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redacted] 작년에 비해서 50%로 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redacted] 감이 되었는데 다른 명목으로 해서 계상이 된것이 없습니까?

○ [redacted] 없습니다.

○ [redacted] 월액여비도 본청에는 없고 면에만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른 명목으로 된것이 없습니까?

○ [redacted] 없습니다.

○ [redacted]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4,700만원이..., 다른과에는 없습니까?

○ [redacted]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에는 지침에 따라서..., 다른과는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redacted] 관서당 경비도 작년도 각종 증빙서를 보니까 전부 영터리

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4,700만원이 될수가 없는데 어떤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무엇입니까?

2,600만원,

○ 이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 이앞에 관서당 경비는 무엇입니까?

42페이지 1,924만원이 또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이것은 각실과 소 플로 활용하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 1,900만원은 기획실 것이고 그렇습니까?

뒷장을 넘겨보면 관서당 경비가 3,562만원이 또 있습니다.

○ 예산 운영상 전체에 비례해서 5%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장은 기획실것이고 뒤에것은 전체 풀입니다.

○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평창군 전체것이라는 것입니까?

○ 을지훈련이라던가 각종 훈련시에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을지훈련은 훈련이고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수용비 2,600만원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예산서 발간, 예산심의자료 문제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발간 그건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 그리고 광문춘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무원여비 1억3,514만원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여비가 1억3,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엇 하는데 들어갑니까?

○ 들어갑니다.

도에서 각실과별로 해당되는 분야별로 교육이 있고 보통 내무부 같은 경우는 3주이상...

○ 3주이상을 해도 일당을 주는것이 아닌데 8km이하의 지하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8km이상은 국내여비를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왕복차비만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교육받는 일당을 주는것이 아니라는 애긴데 1억3,500만원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 **企劃室長 高祖權** 본인의 체재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6개월이상 받는 교육도 있고, 어찌 되었던 가서 자고 먹고 해야 합니다.

○ **李致玉 委員** 공무원 교육원이 밥을 다 주는데지....,

○ **企劃室長 高祖權** 교육이 합속이 있고 비합속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내무부 교육을 4-5섯번 3주짜리 갖다 왔는데 전부 비합속입니다.

○ **李致玉 委員** 그리고 군정시책 업무수행여비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 **企劃室長 高祖權** 이것은 풀여비입니다.

○ **李致玉 委員** 이상입니다.

○ **金鍾永 委員** 판정보비도 50%감이 되는데 이런 여비라던가 민간에 대한 여비도 50%정도는 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급한 일이다 쓰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高祖權** 제생각에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상을 하는데 더 증가 하지도 않고 지침에 의한 기준을 정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 **金鍾永 委員** 93년에 비해서 이런 예산이 조금도 감이 된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樂雲**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아직까지 의사일정은 남아 있으나 금일 예정된 회의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회의가 중지된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出席委員

委員長 金 樂 雲
 幹 事 郭 文 春
 委 員 李 致 玉
 委 員 李 相 薰
 委 員 朴 容 泰
 委 員 朱 泰 元
 委 員 金 鍾 永

○ 委員 아닌 議員

議 長 韓 榮 一

○ 出席公務員

企 劃 室 長 高 昶 植
 財 務 課 長 李 永 德

○ 議會事務課

專 門 委 員 辛 敦 善
 議 事 係 長 咸 京 鎭

[議 席]

○ 議席表 (563 面에 실음)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59條의 規定에
외거 署名捺印함.

1993年 12 月 9 日

委員長 金 樂 雲 

專門委員 辛 敦 善 

질의 · 서면 답변서

질의	파 문 춘 위원	답 변	평창군수(재무과장)
회의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2 차 예결위 ('93. 12. 8)		
<p>< 질의요지 ></p> <p style="margin-left: 40px;">○ 복지회관 목욕탕과 예식장운영 월별 금년 세입 내용은.</p>			

< 답 변 >

-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93년도 월별 이용실적은 불임과 같습니다.

'93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이용자수	13,395	1774	1759	1872	1510	1404	802	529	498	654	790	1317	486
	수입금액	7,818	1136	1098	1114	877	819	420	258	300	331	464	729	272
미	이용자수	5,036	909	870	957	758	655	260				61	444	122
	수입금액	3,189	624	582	625	462	381	158				34	250	73
방	이용자수	918	128	169	213	112	116						130	50
	수입금액	624	92	120	119	88	96						78	31
봉	이용자수	7,441	737	720	702	640	633	542	529	498	654	729	743	314
	수입금액	4,005	420	396	370	327	342	262	258	300	331	430	401	168
용	이용자수				없					음				
	수입금액				없					음				

※ '93. 12. 9일 기준 실적으로 작성

질의. 서면답변서

질의	김종영 의원	답변자	평창군수 (기획실장)
회의	제20회평창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 12. 18)		
<p>< 질 의 요 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보비와 관련된 당초예산 현황 			

김종영의원께서 질의하신 '94 당초예산에 계상된 판.정보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161,180천원이 계상된 반면 특수활동비는 177,8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추진비 _____ 161,180천원
 - 기관공통업무추진비(월정액) _____ 52,140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정활동) _____ 21,600천원
 - 직급정액업무추진비 _____ 45,440천원
 - 특정시책업무추진비 _____ 42,000천원

2. 특수활동비 _____ 177,840천원
 - 직급정액특수활동비 _____ 17,000천원
 - 특수시책특수활동비 _____ 126,000천원
 - 감사담당공무원활동비(월정액) _____ 1,800천원
 -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 _____ 14,640천원
 - 예산담당공무원활동비(") _____ 2,400천원
 - 의회운영특수활동비 _____ 16,000천원

1992年度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案

檢 討 報 告

專 門 委 員 辛 教 善

目 次

I. 概 要

1. 一般會計

가. 歲入規模 및 內譯

나. 歲出規模 및 內譯

1) 歲出內譯

2) 移越金 內譯

3) 轉用 및 利用內譯

4) 不用額 內譯

다. 豫備費 支出內譯

라. 債務負擔行爲

2. 特別會計

II. 檢討意見

III. 參考資料

1. 財產現況

2. 債務增減 및 現在額

3. 歲入金 未納 事由別 現況

4. 歲入 歲出外 現金 種類別 內譯

1992年度 決算 収 豫備費 支出 承認案

檢 討 報 告

I. 概 要

1. 一般會計

가. 歲入規模 및 內譯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徵 收 決定額	收 納 額	未 收納額	不 納 缺損額	移越額	備 考
計	35,346	42,376	42,139	237		237	
地 方 稅	4,505	4,772	4,615	157		157	
普通稅	4,288	4,432	4,358	74		74	
目的稅	151	205	186	19		19	
過年度收入	66	135	71	64		64	
開發負擔金							
稅 外 收 入	8,094	14,862	14,782	80		80	
經常的收入	2,495	2,044	2,020	24		24	
臨時的收入	5,599	12,818	12,762	56		56	
地 方 交 付 稅	15,802	15,802	15,802				
普通交付稅	14,683	15,802	15,802				
特別交付稅	1,119						
地 方 讓 與 金							
補 助 金	6,945	6,940	6,940				
國庫補助金	2,622	2,562	2,562				
道 補助金	4,323	4,378	4,378				

- 92年度 歲入豫算은 總 353억4,594만원이었으나, 실收納額은 421억 3,887만원으로 67억 9,293만원이 追加收入되었으며 追加收入內譯은 아래와 같음.

(單位: 百萬元)

區 分 科 目	豫 算 額	收 納 額	豫算對收納	比 率(%)	備 考
計	35,346	42,139	6,793	118	
地 方 稅	4,505	4,615	110	102	
稅外 收入	8,094	14,782	6,688	180	
地方交付稅	15,802	15,802	0	100	
地方讓與金					
補 助 金	6,945	6,940	△ 5	99	

- 未收納額은 總 2억 3,718만원으로, 93年度로 移越되었으며, 移越額은 地方稅1억 5,664만원과 稅外收入 8,054만원임.
- 地方稅法 第 29條 規定에 의한 不納缺損 處分은 없음.

4. 歲出規模 및 內譯

1) 歲出 內譯

(單位: 百萬圓)

區 分	豫算額	移越額	豫備費 使用額	轉用額	豫算現額	支出額	翌年度 移越額	不用額	備 考
計	35,346	8,023	(146)	(46)	43,369	37,266	3,338	2,765	
議 會 費	282			1	282	269		13	
一 般 行 政 費	9,703	45	7	8	9,748	9,120		628	
社 會 福 祉 費	4,481	1,077	23		5,558	5,227	16	315	
產 業 經 濟 費	5,892	2,874	12	36	8,766	7,185	1,266	315	
地 域 開 發 費	10,551	3,766	28	1	14,317	12,132	944	1,241	
文 化 及 體 育 費	3,455	407	76		3,862	2,686	1,112	64	
民 防 衛 費	533	0			533	497		36	
支 援 及 其 他 經 費	449	Δ 146	- 146		303	150		153	

- 歲出豫算은 353억 4,600만원이었으나, 豫算成立後 80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91年 豫算移越額), 豫算現額은 433억 6,889만원이며,
 - . 豫備費 使用은 總 1억 4,625만원을 使用하였으나, 장별 現額은 增減이 있으나 豫算總額에는 變動이 없음.
 - . 豫算轉用 또한 3,697만원으로 豫算規模에는 變動이 없음.
 - . 이 중 支出額은 豫算現額對比 85.9%, 372억 6,600만원이며 33억 3,800만원은 93年度 移越되었고 ,27억 6,493만원이 不用處理 되었음.

2) 移越金 內譯

- 移越金은 總 27건에 33억 3,800만원으로 그중 明示移越이 2건에 2억700만원이고 事故移越이 25건 31억 3,100만원으로 地方財政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이월임.
- 移越事業중 明示移越은 대화체육관 건립부지매입지연 1건에 2억원과 우수마을특별지원 賞事業費가 1건 690만원으로 對象地 確定遲延으로 移越되었으며,
- 事故移越事業은 25건에 1억 3,100만원으로 대부분 發注 遲延및 工期不足으로 事故移越 되어있음.

3) 轉用 및 利用 內譯

(單位 : 千圓)

區 分	科 目			豫 算 額	轉用額	豫算現額
	細 項	細 細 項	目			
計	11건				36,971	
기말수당 및 연가보상금 부족액	의 회 비	관서운영비	265	3,825	△ 1,000	2,825
			228	24,131	660	24,791
		인 건 비	102	25,107	340	25,447
기말수당인 상으로인한 부족액	기 획 관 리 비	인 건 비	105	24,404	△ 350	24,054
			102	21,002	350	21,352
직무수당인 상으로인한 부족액	임 업 비	관서운영비	228	43,692	△ 100	43,592
		인 건 비	105	12,631	100	12,731
연가보상금 부 족	지 역 경 제 비	인 건 비	102	32,408	△ 2,000	30,408
			228	22,867	2,000	24,867
기말수당인 상으로인한 부족액	지역개발 사 업 비	인 건 비	105	36,621	△ 1,061	35,560
			102	31,996	721	32,717
		관서운영비	228	28,285	340	28,625
공공요금부 족(전화요금 및카폰수수 료)	내 무 행 정 비	경 사 업 상 비	311	109,379	△ 3,369	106,010
		관 운 영 서 비	821	79,450	3,369	82,819
민간인에대 한자본적보 조금일부가 행불가능하 므로 시 설비로 전 용	임 업 비	주 요	431	130,662	△ 24,743	105,919
		사 업 비	412	875,610	24,743	850,867

區 分	科 目			豫 算 額	轉 用 額	豫 算 現 額
	細 項	細 細 項	目			
신규직원연 가보상금부 족(미탄면)	내 무	인 건 비	105	94,871	△ 100	94,771
	행 정 비		102	59,388	100	59,488
신규직원연 가보상금부 족(계촌출 장소)	내 무	인 건 비	102	7,531	△ 104	7,427
	행 정 비	관서운영비	228	7,172	104	7,276
제16회청백 봉사상수상 자해의시찰	기 획	기 본	211	168,705	△ 1,988	166,717
	관 리 비	경 상 비	213	20,000	1,988	21,988
향토인재양 성교육생해 외연수로인 한 국외여 비부족	기 획	기 본	211	168,705	△ 2,156	166,549
	관 리 비	경 상 비	213	20,000	2,156	22,156

○ 豫算轉用の 主要內譯은

- 公共料金不足(전화요금및 카폰수수료) 3,369천원
- 民間人에 대한 資本的 補助 執行不能으로 施設費로 24,743천원
- 第16回 청백奉仕賞 受賞者 海外視察 1,988천원
- 郷土人才養成教育生 海外研修 2,156천원
- 人件費 부족분 7件에 4,715천원

4) 不用額 內譯

○ 不用額은 27억 6,493만원으로 豫算現額 對比 6.4%이며

- 議 會 費 : 1,327만원 (豫算現額 對比 4.6%)
- 一 般 行 政 費 : 6억2,773만원 (" 6.5%)
- 社 會 福 祉 費 : 3억1,405만원 (" 5.6%)
- 産 業 經 濟 費 : 3억1,620만원 (" 3.6%)
- 地 域 開 發 費 : 12억4,112만원 (" 8.6%)
- 文 化 및 體 育 費 : 6,354만원 (" 1.6%)
- 民 防 衛 費 : 3,635만원 (" 6.8%)
- 支 援 및 其 他 經 費 : 1억5,265만원 (" 50.5%)
- 國 道 費 補 助 金 執 行 殘 額 70,823 千 元 을 控 除 하 면 純 不 用 額 은 1,464,093 千 元 으 로 豫 算 現 額 對 比 3.3% 임 .

다. 豫備費 支出 內譯

(單位: 千圓)

事業名	支出 決定額	支出額	不用額	處理日字			備考
				承認	決定	支出	
計	146,246	146,246	0				
동절기설해용급복 구장비구입	13,640	13,640	0	1. 8	1. 8	1. 8	
특설로인한제설작 업비	4,000	4,000	0	1.18	1.18	1.18	
진부면소속환경미 화원퇴직에따른 퇴직금	6,960	6,960	0	3.26	3.26	3.26	
도암지역제설작업 비	3,000	3,000	0	3.19	3.19	3.19	
제27회도민체전출 전경비지원	66,769	66,769	0	5.14	5.14	5.14	
환경미화원퇴직금	402	402	0	5.27	5.27	5.27	
청소관리	382	382	0	6.30	6.30	6.30	
도암면환경미화원 퇴직금	7,179	7,179	0	7.12	7.12	7.12	
도열병공동방제 농약대	5,703	5,703	0	8.17	8.17	8.17	
우박피해농가비료 지원	2,252	2,252	0	8.20	8.20	8.20	
부당이득금반환청 구에따른배상금	2,361	2,361	0	9.14	9.14	9.14	
지방공무원명에퇴 직및 생활민원행 정전산토지대장 정리원	1,066	1,066	0	10. 6	10. 6	10. 6	
	3,812	3,812	0	10. 6	10. 6	10. 6	

(單位: 千圓)

事業名	支出 決定額	支出額	不用額	處理日字			備考
				承認	決定	支出	
토지대장정리원금 퇴직금	1,982	1,982	0	10. 6	10. 6	10. 6	
복지회관관리원금 퇴직금	383	383	0	10. 6	10. 6	10. 6	
복지회관관리원금 퇴직금	4,617	4,617	0	10. 6	10. 6	10. 6	
교육홍보계장순직 장례비	990	990	0	10.16	10.16	10.16	
교육홍보계장순직 장례비	2,875	2,875	0	10.16	10.16	10.16	
교육홍보계장순직 장례비	500	500	0	10.16	10.16	10.16	
제4회도내일주역 전마라톤출전경비 및 환영행사	8,933	8,933	0	10.24	10.24	10.24	
도암면 환경미화 원퇴직금	4,618	4,618	0	11. 2	11. 2	11. 2	
도암면환경미화원 퇴직금	959	959	0	12.24	12.24	12.24	
평창읍환경미화원 퇴직금	2,863	2,863	0	12.30	12.30	12.30	

라. 債務負擔行爲

(單位:百만원)

과 목				사 업 명	채무부담 행위승인 액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조건	채무부 담행위 사유
장	관	항	세항					
문화 및 체육	체육 비	체육 시설 확충	체육 진흥	평창종합운동 장건립공사	523	523	일시상환	'92 사업 마무리 위한 조치

. 地方財政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1992年度 債務負擔行爲額은 평창종합운동장
건립 마무리를 위한 措置로 1件에 5억 2,300만원임.

2. 特別會計

가. 上水道 特別會計

○ 歲入

(單位:百萬元)

區分 科目	豫算額	徵收 決定額	收納額	未 收納額	不納 缺損額	移越額	備考
計	932	961	957	4		4	
事業收入	223	362	359	3		3	
事業外收入	664	599	598	1		1	
補助金	45	0					

- 歲入決算은 9억 6,108만원을 徵收決定하고 收納額은 9억5,664만원이며 4,443만원이 未收納되어 翌年度로 移越됨.
- 未收納內譯은 使用料 341만원과 過年度 收入 113만원임.

○ 歲出

(單位:百萬元)

區分 科目	豫算額	'91 移越額	豫算 現額	支出額	翌年 移越額	不用額	備考
計	932	61	993	806	73	114	
管理費	630	61	691	536	73	82	
事業費							
地方債償還	302		302	270		32	

- 歲出은 豫算現額 9억 9,312만원에서 8억 629만원이 支出되었으며,
- 移越額 7,270만원은 上水道 擴張設計用役費로 工期不足으로 인하여 翌年度로 移越되었음.
- 不用額은 總 1억 1,412만원으로 管理費 8,221만원과 地方債償還 3,192만원임.

○ 事故移越事業調書

(單位: 百萬元)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행위액	지출잔액		이월사유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상수도확장 설계용역비	96	73	23	73	공기부족

○ 平昌上水道 擴張設計 用役費는 豫算額 9,600만원중 7,300만원은 工期不足
으로 翌年度로 移越되고 2,300만원은 不用處理 되었음.

나. 住宅事業特別會計

○ 歲 入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徵 收 決定額	收 納 額	未 收 納 額	不 納 缺 損 額	移 越 額	備 考
計	901	2,032	1,385	647		647	
事 業 收 入	669	840	293	547		547	
事 業 外 收 入	232	1,192	1,092	100		100	

- 歲入決算은 20억 3,255만圓을 徵收 決定하고 13억 8,475만圓을 收納하고 6억 4,780만圓이 翌年度로 移越되었음.
- 未收納內譯은 融資金 利子收入 2억 8,220만圓, 融資金 回收收入 1,082만圓 過年度收入 8,933만圓이 未收納되었음.(국민주택)

○ 歲 出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91 移 越 額	豫 算 現 額	支 出 額	翌 年 移 越 額	不 用 額	備 考
計	901	1,048	1,949	1,347		602	
管 理 費							
事 業 費	16	1,048	1,064	1,003		61	
地 方 債 償 還	885		885	344		541	

- 歲出은 豫算現額 19억 4,916만圓중 支出額은 3억 4,694만圓이며, 6억 222만圓이 不用額임.

다. 새마을 所得金庫 特別會計

○ 歲 入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徵 收 決定額	收 納 額	未 收 納 額	不 納 缺 損 額	移 越 額	備 考
計	37	36	36				
事 業 收 入	1						
事 業 外 收 入	36	36	36				

○ 歲入決算은 3,608만 원을 徵收決定 全額 收納되었음.

○ 歲 出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91 移 越 額	豫 算 現 額	支 出 額	翌 年 移 越 額	不 用 額	備 考
計	37		37	30		7	
管 理 費							
事 業 費	37		37	30		7	
地 方 債 償 還							

○ 歲出은 豫算現額 3,669만원중 , 새마을所得事業 一般融資金으로 3,000만원 이 融資되었고, 667만원이 不用處理되었음.

라. 새마을 所得特別支援事業 特別會計

○ 歲 入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徵 收 決定額	收 納 額	未 收 納 額	不 納 缺 損 額	移 越 額	備 考
計	187	208	208				
事 業 收 入							
事 業 外 收 入	187	208	208				

○ 歲入決算은 2억8,443만圓을 徵收決定 全額收納되었음.

○ 歲 出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91 移 越 額	豫 算 現 額	支 出 額	翌 年 移 越 額	不 用 額	備 考
計	187		187	101		86	
管 理 費							
事 業 費	187		187	101		86	
地 方 債 償 還							

○ 歲出은 豫算現額 1억 8,680만圓중 支出額은 1억 100만圓이고
8,580만圓은 不用額으로 處理 되었음.

마. 零細民 生活安定基金 特別會計

○ 歲 入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徵 收 決定額	收 納 額	未 收 納 額	不 納 缺 損 額	移 越 額	備 考
計	107	133	120	13		13	
事 業 收 入	1	5	4	1		1	
事 業 外 收 入	106	128	116	12		12	

○ 歲入決算은 1억 3,276만圓을 徵收決定하여 1억 1,971만圓을 收納하고 1,305만圓은 翌年度로 移越됨

○ 未收納額은 融資金利子收入 8만7천圓, 融資金 回收收入 252만圓, 過年度 收入 1,019만圓, 雜收入 34만圓임.

○ 歲 出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91 移越額	豫 算 現 額	支 出 額	翌 年 移越額	不 用 額	備 考
計	107		107	83		24	
管 理 費							
事 業 費	107		107	83		24	
地 方 債 償 還							

○ 歲出은 豫算現額 1억 755만圓중 支出額 8,300만圓은 零細民生活安定

融資事業 融資金으로 支出되었으며, 2,455만圓이 不用額으로 처리 되었음.

바.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 歲 入

(單位: 百萬圓)

區分 科目	豫算額	徵收 決定額	收納額	未 收納額	不納 缺損額	移越額	備考
計	488	487	480				
事業收入							
事業外收入	16	16	16				
補助金	472	464	464				

○ 歲入決算은 總 4억8,702만圓을 徵收決定 全額 收納하였음.

○ 歲 出

(單位: 百萬圓)

區分 科目	豫算額	'91 移越額	豫算 現額	支出額	翌年 移越額	不用額	備考
計	488		488	476		12	
管理費							
事業費	488		488	476		12	
地方債償還							

○ 歲出은 豫算現額 4억8,781만圓중 支出額은 4억7,634만圓이며, 1,147만圓은 不用額 처리 되었음.

사. 農工地區造成 및 管理事業 特別會計

○ 歲 入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徵 收 決定額	收 納 額	未 收 納 額	不 納 缺 損 額	移 越 額	備 考
計	278	266	269				
事業收入	101	46	41				
事業外收入	177	220	228				

○ 歲入決算徵收決定額は 2억 6,589만원으로 全額 收納 하였음.

○ 歲 出

(單位: 百萬圓)

區 分 科 目	豫算額	'91 移 越 額	豫 算 現 額	支 出 額	翌 年 移 越 額	不 用 額	備 考
計	278		278	68		210	
管理費							
事業費	203		203	2		201	
地方債償還	66		66	66		0	
豫備費	9		9			9	

○ 歲出은 豫算現額 27억 7,775만원중 支出額は 6,752만원으로 2억 1,023만원은 不用額 처리 되었음.

○ 不用內譯은 事業費 2억 134만원, 豫備費 822만원임.

아. 公有財産管理特別會計

○ 歲 入

(單位: 百萬圓)

區分 科目	豫算額	徵收 決定額	收納額	未 收納額	不納 缺損額	移越額	備考
計	100	131	131				
事業收入	24	49	49				
事業外收入	76	82	82				

- 歲入決算徵收決定額は 1억 3,146만원으로 過誤納 返還金 237만원을 除外한 1억2,908만원 全額이 收納되었음.

○ 歲 出

(單位: 百萬圓)

區分 科目	豫算額	'91 移越額	豫算 現額	支出額	翌年 移越額	不用額	備考
計	100		100	30		70	
管理費	2		2			2	
事業費	48		48	30		18	
豫備費	50		50			50	

- 歲出豫算現額 1억 9만원으로 支出額は 2,991만원이며 7,081만원이 不用額임.
- 不用內譯은 管理費 168만원, 事業費 1,825만원, 豫備費5,026만원임.

II. 檢討意見

〈 綜 合 〉

- 92年度 一般會計 및 8個特別會計 決算總括은 歲入豫算 444億 3,355만원 과 前年度 移越事業費 91億3,210만원을 包含한 豫算現額은535億6,565 만원에 대하여 收納額은 517億8,022만원임(96.6) 이며
- 歲出豫算은 歲入豫算 現額에 대하여 支出額은 447億 275만원이고 차인 잔액은 70億 7,747만원은 93年度로 各各移越하게 되었음.
- 移越額은 明示移越 2億 690만원 事故移越 47億 5,468만원이고 補助金 執行殘額 7,451만원이며 이를 控除한 純歲計剩餘金은 20億4,138만원임 (豫算現額 對比 3.8%, 豫算額對比 4.5%)

1. 一般會計

가. 歲入 決算

- 歲入豫算額은 353億 4,595만원이며 徵收決定額은 423億 7,600 만원으로 豫算額의 19.8%를 增額하여 徵收 決定하였으며, 實收納額은 421億 3,887만원으로 歲入豫算對比 67億9,292만원을 追加 徵收되었으며 (19.2%) 徵收決定額보다는 2億3,718만원(0.6%) 의 未收納額이 發生 하였음.
- 豫算은 1會計年度의 收入과 支出의 豫定表이며 1年間의 財政計劃이므로 歲入, 歲出 추계에 正確을 요하는 主要한 사안으로 增, 減要因이 發生되 면 更正을 통하여 健全財政이 견지되도록 해야함.

92年度 決算上 主要歳入의 不均衡 豫算의 内譯은 다음과 같음.

· '92歳入 過多計上 主要内譯

(單位 : 千원)

科 目 別		豫 算 額	實 際 收 納 額	未 收 納 額	徵 收 比 率	備 考
地方稅	農 地 稅	14,000	4,753	9,427	34%	
稅外收入	國有財產賃貸料	25,120	10,735	14,385	42	
	其他財產賃貸料	120,439	58,027	62,412	48	
	公有財產賣却賃	130,000	9,277	120,723	7	
	負 擔 金	500,000	-	500,000	-	
	過 年 度 收 入	798,014	13,635	784,379	1.7	

· '92歳入 過小計上 主要内譯

(單位 : 千원)

科 目 別		豫 算 額	實 際 收 納 額	超 過 收 納 額	徵 收 比 率	備 考
地方稅	屠 蓄 稅	12,000	30,604	18,604	% 255	
	都 市 計 劃 稅	63,000	93,367	30,367	148	
稅外收入	事業場生産收入	68,750	146,392	77,642	212	
	轉 入 金	-	658,338	658,338	-	
	기 타 雜收入	13,500	91,707	78,207	679	
補助金	기 타 補助金	-	6,393	6,393	-	

○ 歲出豫算에 編成치 않고 徵收決定한

- 稅外收入의 轉入金 6억5,833만8천원, 辯償金123만원과

- 補助金의 기타 補助金6,393천원등 地方財政法 第29條 (1會計年度의 모든收入을 歲入으로 하고 모든 支出을 歲出로 한다)의 豫算總係主義 原則에 의거 歲入豫算에 計上 했어야 할 事項임.

○ 稅外收入중 負擔金 5억원은 歲入豫算에 計上되어 있으나 徵收決定및 歲入 豫測이 불투명한 송정택지개발 分讓金을 架空歲入 推計하여 計上한 事例 임.

○ 稅外收入중 ' 92公有財産 賣却收入은 地方財政法 第77條 規定에 의거 財産處分에 관한 平昌郡議會의 議決을 얻은 事項으로서 歲入豫算에 1억3,000만원이 計上 되었으나 7%에 불과한 9,277천원이 賣却處分된 狀態임.

○ 稅外收入중 過年度收入 798,014천원중에는 근로자복지주택 收入 7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徵收한 實績이 決算上 나타나 있지 않고 過年度 賃貸料등 13,635천원만이 徵收되어 徵收實績이 豫算額 對比 1.7 %에 불과함.

○ 過年度 歲入豫算을 결손처분없이 移越하면서 다음年度 豫算에 計上치 않고 누락되는 事例가 反復되고 있음.

- '92年度 地方稅 收入중 未收納額은 156,641천원이 全額 移越되었으나 93年度 歲入豫算에는 9,500만원만 計上,

- '92年度 稅外收入중 未收納額은 8,054만원이 全額移越 되었으나,93年度 歲入豫算에는 2,700만원만 計上,

- 地方稅法 第29條 및 同施行令 第14條 規定에 의거 徵收對象物件은 強力 徵收措置하고 缺損處分對象 物件에 대해서는 稅原을 整理 하는등 健實한 財政運營이 各별히 要請되는 事項임.

나. 歲出豫算

○ '92 歲出 決算은 豫算額이 353억4,595만원이고 91年度 移越額(明示,事故) 80억 2,293만원을 포함한 豫算現額은 433억6,889만원인바, 85.9 %인 372억 6,602만원을 支出하고 7.7 %인 33억 3,789만원은 93년도로 移越되었으며, 27억 6,493만원은 不用額 處理 되었음 .

○ 豫算額에 比하여 支出 比率이 낮은것은

- 일부 補助金 豫算이 年末에 確定 內示되어 事故및 明示移越이 불가피 한 境遇

-計劃된 事業 豫算이 效率的으로 會計年度내에 執行치 못한境遇

· 上部 計劃에 의거 豫算 節減을 일률적으로 施行하여 事業 우선 順位에 따라 再投資 하지 않음으로서 不用額이 過多 發生

· 結果적으로 健全한 財政을 堅持 하지 못하며 住民에게 질높은 行政 서비스를 提供치 못한 結果를 招來

○ 移越事業은 總26件에 33억 4,755만원이 移越 되었으며, 明示移越이 2件에 2억 690만원, 事故移越이 25件에 31억4,085만원이 이월 되었음 移越되었음.

- 農地改良管理 主要事業費는 2개 費目에 16,560천원이며,

91年度에 移越 되었으나 92年 決算에 不用額 處理된 事例

- '91年度에는 水害復舊 事業의 遲延으로 多數의 事故移越事業이 發生 하였다고 하나 每年 많은 件數의 移越 事業이 反復 發生 하는 것은 止揚 되어야 함.

○ 豫算轉用은 11件에 3,697만원을 轉用을 하였으나 議決科目이 아닌 行政科目이라 하더라도 豫算轉用은 最小化 되어야 함.

- 地域經濟費 賞與金(102) 2,000천원과, 地域開發費의 定額手當(105)

1,061천원은 厚生福利費(228)로 轉用 하였고,

地方財政法 第34條 1項 1號의 俸給에는 給與.賞與金.定額手當등이
包含 되므로 止揚 되어야 함(豫算會計法 施行令 第18條)

- 營林管理 主要事業費는 民間에 대한 資本的補助(431)에서 2,474만
원을 事業 執行이 어렵다는 事由로 施設費(412)로 전용 한것은 事前
豫測이 可能한 事業費로서 追更 豫算에서 調整 되었어야 할 事項임.
- o 不用額은 27억6,493만원으로서 豫算現額 對比하여 6.4%가 發生하고
있으며,91年度 對比(6.1%)하여 增加 趨勢가 反復 되고 있음.

- 決算內容別로 分析하여 보면

- . 豫 算 節 減 538,000천원(20%)
- . 補助金執行殘額 70,822천원(2%)
- . 豫算執行殘額 2,025,954천원(74%)
- . 豫 備 費 130,156천원(4%)

- 不用額 發生 原因이 豫算節減으로 5억3,800만원(20%) 을 勘案 하더
라도 豫算執行殘額 20억2,595만원(74%)이 不用額으로 處理 된것은
歲出豫算의 過多編成으로 因하여 可用 財源을 懸案事業에 投資치
않고 豫算을 死藏하는 結果임.

- 決算上 나타난 不用額중 27個 費目的 1억 4,987만원은 歲出豫算에 計上은 되어 있으나 全額 不用 되는등 豫算 運營의 問題點이 導出되고 있음.
- 繼續費 制度는 地方財政法 第33條 規定에 의하여 工事나 事業이 完工年度가 數年을 要하는 事業은 所要 經費의 總額과 年度別 金額에 대하여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도록 規定하고 있음.
 - 평창종합운동장시설공사, 송정택지개발사업등은 繼續 事業으로 推進 됐어야 하나 制度的으로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狀態임.
- 豫備費는 2억7,178만원으로서 冬節氣 雪害復舊, 除雪裝備 購買의 21件에 1억 4,625만원을 支出 하였음 .
 - 豫測할수 없었던 雪害 피해등에 執行 한것은 豫備費 執行 目的이 達成 되었으나,
 - 賠償金, 退職手當 不足分등에 使用한 것은 機關運營의 基本經費 이므로 該當科目에 計上함이 妥當.
 - 특히 每年 反復되는 道民體典 出戰經費, 道內一周驛傳마라톤 經費및 歡迎行事に 執行된 事例는 豫備費 使用 目的에 反하는 事項임.
 - 豫備費 支出時 同一 事案을 3회에 걸쳐 執行하는 事例 止揚.

2. 特別會計

○ 上水道 特別會計

- 使用料 收入은 收益者負擔 原則에 의거 全額 徵收되어야하나 3,412 만원이 未收納되어 徵收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며 道費補助金 4억5,000원은 92년 第3回 追更時 歲入編成 되었으나 收納 處理하지 않고 있음.

○ 住宅事業特別會計

- 徵收決定額에 비해 歲入豫算을 過少 編成하였으며, 融資金 利子收入 및 融資金回收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未收納이 過多 發生하고 있음.

○ 새마을 所得金庫特別會計

- 徵收決定額 全額이 收納되었으며, 새마을所得事業 一般融資金融資로 設置 目的을 다하고 있음.

○ 새마을 所得金庫特別支援事業特別會計

- 徵收決定額 全額이 收納되었으며,歲出豫算現額에 비해 過多 不用額이 發生 하고 있으며 設置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있음.

○ 零細民 生活安定基金特別會計

- 歲入 融資金 利子收入과 融資金回收에 未收納額이 過多 發生 徵收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있으며,豫算現額에 비해 不用額이 過多發生으로 零細民 生活安定支援에 寄與하지 못하고 있음.

○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 徵收決定額 全額이 收納되었으며, 歲入徵收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農工地區造成및管理事業特別會計

- 徵收決定額 全額收納되었으나, 豫算現額에 비해 不用額이 過多
發生 農工地區管理에 대한 特別對策이 要求됨.

○ 公有林野管理事業特別會計

- 徵收決定額 全額이 收納되었으나 豫算現額에 비해 不用額이 過多
發生 資金管理에 대한 對策이 要求됨.

Ⅲ. 參考資料

1. 財產現況 (道有十郡有)

(單位: 百萬圓, ㎡)

區 分		種 類	'91年度末 現在額	增 減 現 況		'92年度末 現在額	
				增	減		
合 計			19,676	324	797	19,203	
地	小 計	數量	128,589	197	5,834	122,952	
		金額	15,607	51	775	14,883	
	埜 地	數量	179	15	30	164	
		金額	3,916	28	57	3,887	
	田	數量	2,630	64	902	1,792	
		金額	3,688	13	174	3,527	
	畜	數量	59	44		103	
		金額	278	5		283	
	林 野	數量	121,431	50	1,601	119,880	
		金額	4,523	2	59	4,466	
	其 他	數量	4,290	24	3,301	1,013	
		金額	3,202	3	485	2,720	
	建 物	小 計	數量	27,047	2,432	725	28,754
			金額	4,060	273	22	4,311
事 務 所		數量	16,981	1,245		16,981	
		金額	2,743	56		2,908	
住 宅		數量	452	7		508	
		金額	31	1,131	725	38	
其 他		數量	9,614	101	22	10,020	
		金額	1,286			1,365	
機 械・機 具		數量	24			24	
		金額	9			9	

2. 債務增減 및 現在額

가. 種類別

(單位: 百萬圓)

區分 種類別	'91年度末	增 減 額			'92年度末
		計	行爲額	消滅額	
計	5,309	- 484	210	694	4,825
借入金	5,214	- 390	210	600	4,824
債務負擔行爲	95	- 94		94	1

나. 會計別

(單位: 百萬圓)

區分 會計別	'91年度末	增 減 額			'92年度末
		計	行爲額	消滅額	
計	5,309	- 484	210	694	4,825
一般會計	1,371	- 94		94	1,277
特別會計	3,938	- 390	210	600	3,548
上水道	1,306	- 39	210	249	1,267
住宅	2,632	- 351		351	2,281

3. 歲入金 未納 事由別 現況

○ 未收納 現況

(單位：百萬圓)

事 由	計	地 方 稅					稅 外 收 入		
		小計	普通稅	目的稅	過年度收入	開發負擔金	小計	經常的	臨時的
財力不足	236	156	73	19	64		80	24	56

4. 歲入歲出額 現金種類別 現在額內譯

(單位：百萬圓)

區 分	'91年度末	增 減			'92年度末
		計	行爲額	消滅額	
計	195	131	1,273	1,142	326
保管金	165	117	1,165	1,048	282
誠金等寄附金	6	13	64	51	19
雜種金	24	1	44	44	25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及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 討 報 告

專 門 委 員 辛 教 善

目 次

I . 概 要

1. 會 計 別 規 模

2. 一 般 會 計

가. 歲 入 豫 算

나. 歲 出 豫 算 內 譯

(1) 經 濟 性 質 別

(2) 機 能 別 現 況

다. 地 方 債 償 還 計 劃

라. 明 示 移 越 內 譯

3. 特 別 會 計

가. 上 水 道 特 別 會 計

나. 住 宅 事 業 特 別 會 計

다. 새 마을 所 得 金 庫 運 營 管 理 特 別 會 計

라. 醫 療 保 護 基 金 特 別 會 計

마. 零 細 民 生 活 安 定 基 金 特 別 會 計

바. 農 工 地 區 造 成 及 管 理 事 業 特 別 會 計

II . 檢 討 意 見

1. 一 般 會 計

2. 特 別 會 計

I. 概 要

1. 會計別 規模

(單位 : 百萬元)

規 模 會 計 別	'94當初 豫算額	'93當初 豫算額	增 減	伸張率(%)		備考
計	38,910	51,742	Δ 12,832	75		
一 般 會 計	35,871	40,916	Δ 5,045	88		
特 別 會 計	3,039	10,826	Δ 7,787	28		
上 水 道	1,324	3,096	Δ 1,772	43		
住 宅 事 業	872	839	33	103		
醫 療 保 護 基 金	552	446	106	124		
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	201	10	191	201		
零細民生活安定基金	43	148	Δ 105	29		
農工地區造成 및 管理事業	47	157	Δ 110	30		
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		96	Δ 96	Δ 100		
公有林野管理事業		76	Δ 76	Δ 100		
地 方 讓 與 金 事 業		5,958	Δ 5,958	Δ 100		

○ 회계별 전출금 4억5,500만원을 공제하면 순계총규모는 384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3,900만원으로 규모에는 변동이 없음.

2. 一般會計

가. 歲入豫算

(單位: 百萬圓)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張率
	豫算額	構成比	豫算額	構成比		
計	35,871	100	40,916	100	△ 5,045	88
地 方 稅	5,751	16	4,886	12	865	117
稅 外 收 入	4,468	12	10,739	26	△ 6,271	42
經常的	2,833	8	2,866	7	△ 33	99
臨時的	1,635	5	7,873	19	△ 6,238	21
地方交付稅	17,561	49	17,561	43	0	
補 助 金	8,091	23	7,730	19	361	104
國庫補助金	5,008	14	3,637	9	1,371	138
道費補助金	3,083	9	4,093	10	△ 1,010	75
地 方 債						

○ 세목별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감소로 크게 감소 하였음.

○ 자주재원율은 93년도 40%에서 28%로 전년대비 12%가 감소 하였으며,

0 歲入項別 內譯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構 比	'93 當 初	構 比	增 減	伸 張 率
	豫 算 額		豫 算 額			
合 計	35,871	100	40,916		Δ 5,045	88
地 方 稅	5,751	16	4,886	12	865	117
稅 外 收 入	4,468	12	10,739	26	Δ 6,271	42
經常的稅外收入	2,833	8	2,866	67	Δ 33	99
財產賃貸收入	173		146		27	120
使用料收入	2		2		0	
收受料收入	529		640		Δ 111	83
事業場收入	160				160	
徵收交付金	1,817		1,877		Δ 60	96
利子收入	152				152	
臨時的稅外收入	1,636	4	7,873		Δ 6,237	21
財產賣却收入	130		7,830		Δ 7,700	2
移 越 金	90				90	
地 方 價						
轉 入 金						
負 擔 金	600				600	
雜 收 入	174		32		142	543
過年度收入	238		27		615	
地方交付稅	17,561	49	17,561	43	0	
法定交付稅	17,561					
增額交付稅						
補 助 金	8,091	23	7,730	19	361	104
國庫補助金	5,008		3,636		1,371	
道費補助金	3,083		4,094		Δ 1,010	

나. 歲 出 豫 算 內 譯

(1) 經 濟 性 質 別

(單位:百萬元)

區 分 性 質 別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 算 額	構 成 比	豫 算 額	構 成 比		
計	35,871	100	40,916	100	△ 5,045	88
人 件 費	9,792	27	8,241	20	1,551	118
物 件 費	6,005	17	3,144	8	2,861	190
移 轉 經 費	4,695	13	3,606	9	1,089	130
資 本 支 出	14,295	40	19,760	48	△ 5,465	72
融 資 及 出 資						
補 填 財 原	392	1	1,114	3	△ 722	35
內 部 去 來	476	1	1,672	4	△ 1,196	28
其 他			2,946	7	△ 2,946	
豫 備 費	216	1	433	1	△ 217	50

○ 前年 대비 基本적경비(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는 55억166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업비(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103억2,915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50억4,544만원인 12%가 감소된 예산임.

(2) 機能別 現況

(單位: 百萬元)

장 관 별	1993年度 豫算額					備考
	豫算額	構成比	既定豫算額	3回 追更	伸張率	
합 계	47,538	100	48,243	△ 705	98	
의회비	329	0.7	327	2	101	
선거비						
의회운영비	329		327	2	101	
일반행정비	10,413	22	10,644	△ 231	96	
기획관리비	1,349		1,407	△ 58	96	
내무행정비	7,582		7,723	△ 161	98	
재무행정비	1,502		1,514	△ 12	99	
사회복지비	6,057	13	6,319	△ 262	96	
복지사업비	2,268		2,486	△ 218	91	
보건위생비	1,986		1,979	7		
환경복지비	1,804		1,854	△ 50	97	
산업경제비	8,590	18	8,259	331	104	
농수산비	6,053		5,692	361	106	
임업비	1,828		1,858	△ 30	98	
지역경제비	709		709			
지역개발비	17,789	37	18,413	△ 624	97	
도시개발비	4,058		4,572	△ 514	88	
도로지수사업비	5,335		5,385	△ 50	99	
지역개발사업비	8,396		8,456	△ 60	99	
문화및체육비	3,278	7	3,278	0		
문화예술진흥비	1,060		1,060			
체육비	2,125		2,125			
교육비	93		93			
민방위비	455	1	468	△ 13	97	
민방위비	315		324	△ 9	97	
소방비	140		144	△ 4	97	
지원및기타경비	627	1.3	535	92	117	
지방채상환	280		280			
제지출금	81		81			
예비비	266		174	92	153	

다. 地方債 償還計劃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計	1,725	100	1,202	100	523	143
一 般 會 計	588	34	280	23	308	210
特 別 會 計	1,137	66	922	77	235	123
上 水 道	243	14	59	5	184	411
住 宅 事 業	858	50	817	68	41	105
農 工 地 區 造 成	36	2	46	4	△10	78

○ 지방채 上환은 총17억2,582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 일반회계가 5억8,847만원으로

· 송정택지조성의 원금 3억원과 이자 1억 6,400만원,

· 청사정비기금의 원금 6억 4,400만원과 이자 1억2,864만원,

· 평창하수도사업의 원금 2억7,984만원과 이자1억2,225만원이 계상되었
으며

- 특별회계는 11억3,735만원으로

· 상수도사업 2억4,322만원, 주택사업 8억5,86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550만원을 상환하며,

· 상수도 특별회계 2억7,984만원만 균비부담이고, 8억9,413만원은
원무자 부담으로 되어 있음.

다. 明示移越 調書

(單位:百萬元)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세 항	세 세 항	목				
계				597	597	
통신관리	주요사업비	411	지방세정전산화운영 컴퓨터구입	8	8	전산기도입 심의회결과 불가통보에 따라 '94 이월
		412	지방세전산화 설치 공사비	10	10	
		417	변복조 장치	12	12	
지방수입	경상사업비	411	세무전 S/W설치 및 운영지원및 용역비	6	6	"
문화시설 확충	주요 사업비	412	평창군문화예술회관 건립	350	350	착공시기 미도래
		413	"	51	51	
노인복지 비	주요 사업비	252	공설묘지조성	50	50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중
		412	"	100	100	토지보상 협의지연
		415	"	10	10	"

- 93년도 계상예산중 '9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4건으로
 - 지방세 전산화 운영 컴퓨터 구입 및 설치공사비는 9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전산기 심의결과 불가 통보에 따라 이월되며,
 - 평창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비는 '93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착공시기 미도래로,
 - 공설묘지조성 사업비는 93년도 제1회 추경시 계상되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94년도 각각 이월하게 되는 것임.

3. 特別會計

가. 上水道 特別會計

○ 歲 入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合 計	1,324	100	3,096	100	Δ 1,772	43
事 業 收 入	377	18.5	312	10.1	65	121
事 業 外 收 入	540	40.8	2,473	79.9	Δ 1,933	22
地 方 讓 與 金	57	4.3	311	10	Δ 254	18
補 助 金	350	26.4			350	

○ 세입은 전년도 대비 43% 로 17억7,269만원이 감소되었음

- 사업수입은 3억7,662만원으로 전년대비 6,494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3,996만원, 도비보조금이 5,710만원이며,
- 지방채는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3년 대비 57%가 감소 되었음.

○ 歲 入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合 計	1,324	100	2,936	100	Δ 1,612	45
管 理 費	139	10.4	2,877	98	Δ 2,738	4
事 業 費	942	71.2			942	
地 方 債 償 還	243	18.4	59	2	184	411

○ 사업비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 9억4,232만원과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2억4,323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나. 住宅事業特別會計

○ 歲 入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合 計	872	100	839	100	33	104
事 業 收 入	612	70	683	81	△ 71	90
事 業 外 收 入	260	30	156	19	104	166
補 助 金						

○ 세입예산중 1,302만원은 균비이고 기타 예산은 주택용자금 회수금 (원금, 이자)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전년보다 3,253만원이 증가 되었음.

○ 歲 出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合 計	872	100	839	100	33	104
管 理 費	13	1	21	3	△ 8	62
事 業 費						
地 方 債 償 還	859	99	818	97	41	105

○ 세출예산중 균비인 1,302만원은 수용비및 징수여비이며 8억5,886만원은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다. 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

○ 歲 入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合 計	201	100	106	100	95	189
事 業 收 入	2	1	2	2	0	
事 業 外 收 入	199	99	104	98	95	191
補 助 金						

-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였으며,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23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2,81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1,58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歲 出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合 計	201	100	106	100	95	189
管 理 費						
事 業 費	201	100	106	100	95	189
地 方 債 償 還						

- 새출예산전액 일반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라.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 歲 入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 算 額	構 成 比	豫 算 額	構 成 比		
合 計	552	100	446	100	106	124
事 業 收 入						
事 業 外 收 入	3	0.5	3	0.7		
補 助 金	549	99.5	443	99.3	106	124

- 세입예산은 용자금회수이자수입 24만원과 이자수입 15만원, 군비전입금 252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4,8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歲 出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 算 額	構 成 比	豫 算 額	構 成 比		
合 計	552	100	446	100	106	124
管 理 費	5	1			5	
事 業 費	547	99	446	100	101	123
地 方 債 償 還						

- 세출예산중 5,040천원은 의료보호기금운영보조원 인건비이며, 의료보호사업비와 대불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음.

마. 零細民生活安定基金 特別會計

○ 歲 入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合 計	44	100	147	100	Δ103	29
事 業 收 入	3	7	2	1	1	150
事 業 外 收 入	41	93	145	99	Δ104	28
補 助 金						

-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279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및 미수금 4,0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歲 出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算額	構 成 比	豫算額	構 成 比		
合 計	44	100	147	100	Δ103	29
管 理 費						
事 業 費	44	100	147	100	Δ103	29
地 方 債 償 還						

- 세출예산은 기금운영관리서식인쇄 20만원의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바. 農工地區 造成 및 管理事業特別會計

○ 歲 入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 算 額	構 成 比	豫 算 額	構 成 比		
合 計	47	100	156	100	△ 109	30
事 業 收 入	36	76	46	29	△ 10	78
事 業 外 收 入	11	24	19	12	8	57
補 助 金			91	59	△ 91	

- 세입예산은 용자금이자수입 3,550만원과 93년 이자발생수입 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순세계 잉여금 839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歲 出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伸 張 率
	豫 算 額	構 成 比	豫 算 額	構 成 比		
合 計	47	100	156	100	△ 109	30
管 理 費						
事 業 費	2	4	110	70	△ 108	1
地 方 債 償 還	36	76	46	30	△ 1178	
豫 備 費	9	20			9	

- 세출예산은 서식인쇄 6만원, 농공단지환경조성 233만원, 지방채상환 360만원과 예비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II 檢討意見

綜 合

- 19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58억7,100만원과 특별회계 30억3,900만원을 포함 총389억1,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4억5,500만원을 공제하면 순계 총규모는 38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가 감소 (일반회계 88%, 특별회계 28%)되었으며,
- 예산신장율이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중 송정지구택지매각 77억원과 도비보조금 10억1,000만원이 감액되므로 인하여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추진 일반회계 전입금4억 2,400만원과 도비보조금2억5,300만원이 감소된데 주요인이 있으며,
- 자주재원율은 '93년도 40%에서 28%로, 12%가 감소되었음.

1. 일반회계

가. 세입

- 세입은 총 358억7,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가 감소 되었으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장별로 분석하면 지방세가 57억5,100만원으로 17%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4억6,800만원으로 58%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인 175억 6,100만원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77억 3,000만원으로 4%가 신장되었음.

- 지방세는 전년대비 18%가신장된 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 주민세가 소득세활및 법인세활 증가로 (봉급인상등)인하여 1억5,400만원
 - 재산세가 건물과표및 신축건물 증가로 인하여 1억 3,700만원,
 - 자동차세가 차량증가로(4,900대 → 6,200대)인하여 2억9,200만원
 - 종합토지세가 과표를 19.6%인상함으로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소비량 감소로 1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음.

- 세외수입은 59%인 62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원인은,
 - '93예산에는 송정택지개발분양수익금 78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분양지연으로 77억원을 편성제외하였으며,
 - 수수료 수입에서 물리치료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1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 반면에 군청앞 택지조성 부담금 6억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억 7,100만원 증액 되었으며,
 -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음.

나. 세 출

- 경제성질별 예산의 기본적경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는 204억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점유하고 있음.
- 사업비는 151억6,3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42%이며, 전년 당초대비 67%가 감소하였고, 기타경비는 8억400만원으로 2.2%로 전년대비 12%가 증가 되었음.
-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7%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각실과와 읍면에서 관리하던 인건비를 일괄 편성하고 지방채 차입금 상환 5억8,800만원과 병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원과 새마을사업및 지역안정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행정비로 편성되었음.
-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대비 64%로 22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위생급수를 위한 간이급수시설인건비와 시설비로 9,160만원, 의료장비구입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산업경제비는 전년대비 32%가 증가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고냉지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8억3,000만원, 기계화전업농육성 4억200만원, 기계화영농단육성 9,400만원, 능기계구입지원 3억2,300만원, 농촌지도소청사 증축사업비 1억2,9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1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지역개발비는 전년대비 38%로 81억4,5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평창,대화, 도시계획 지적고시 1억원, 택지조성 6억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3,900만원, 주택개량 2억3,300만원, 부엌개량및 목욕탕개선 3억5,200만원, 화장실개량 1억3,800만원, 경지정리사업 47억6,000만원, 도수로정비 1억6,800만원, 도시기반 시설확충 4억원, 교량가설 3억1,500만원, 군도유지관리2억6,300만원, 도로정비 3억원, 횡계침수지구정비 1억4,000만원, 농어촌마을 포장 11억원, 수해복구채무부담 3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51%로 1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일반 민방위관리 1억4,4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비 2,600만원, 소방행정비 1,400만원이 감소 되었음.

2. 특별회계

'94 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운용 방향에 따라 '92. 1. 1 부터 설치
운용되던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편성되며,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금고
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합되었음.

가. 상수도 특별회계

- 총 13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가 감소 하였으며,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사업비 9억4,200만원, 지방채상환에
2억4,300 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 총 8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군비 1,300만원은 수용비와 징수여비이며, 지방채 상환을 위한
8억5,900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 총 2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가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금고통합으로 인하여 증가 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용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총 5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보조금이 1억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인건비와 의료보호사업비로 편성 되었음.

마.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총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용자금 회수수입 회수 지연으로 인함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용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바.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 총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70%가 감소 되었고,
감소요인은 용자금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한데 있으며
농공지구 환경조성과 지방채이자상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음.

'94 當 初 豫 算 現 況

平 昌 郡

목

차

- '94당초예산 총괄
- 국도비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 사업
- 군 자체사업
- 사회단체 보조금
- 지방채무현황
- 관서당경비 현황
- 의회관련경비
-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94 當 初 豫 算 總 括

○ 豫算總規模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增 減 率
計	38,910	51,742	△ 12,932	△ 24.8
一 般 會 計	35,871	40,917	△ 5,046	△ 12.4
特 別 會 計	3,039	10,825	△ 7,786	△ 72.0
○ 上水道特別會計	1,324	3,096	△ 1,772	△ 57.3
○ 住宅事業特別會計	872	839	33	3.9
○ 醫療保護基金	552	446	106	23.7
○ 零細民生活安定基金	43	147	△ 104	△ 70.8
○ 새마을所得事業	201	106	95	89.6
○ 農工地區造成與管理	47	157	△ 110	△ 70.1
○ 公有林野管理事業	-	76	△ 76	-
○ 地方讓與金事業	-	5,958	△ 5,958	-

○ 一般會計 歲入歲出總括

(單位:百萬元)

區 分		'94 當 初		'93 當 初		增 減
			%		%	
合 計		35,871	100	40,917	100	△ 5,046
歲 入	地 方 稅	5,751	16	4,886	12	865
	稅 外 收 入	4,468	12	10,740	26	△ 6,272
	經常的收入	2,833	8	2,866	7	△ 33
	臨時的收入	1,635	5	7,874	19	△ 6,239
	地 方 交 付 稅	17,561	49	17,561	43	
	地 方 讓 與 金	-	-	-	-	-
	補 助 金	8,091	23	7,730	19	361
	國庫補助	5,008	14	3,637	9	1,371
	道費補助	3,083	9	4,093	10	△ 1,010
歲 出	人 件 費	9,792	27	8,241	20	1,551
	物 件 費	6,005	17	3,144	8	2,861
	移 轉 經 費	4,696	13	3,606	9	1,090
	資 本 支 出	14,295	40	19,760	48	△ 5,465
	融 資 出 資 金	-	-	-	-	-
	補 轉 財 源	392	1	1,114	3	△ 722
	內 部 去 來	475	1	1,672	4	△ 1,197
	其 他	-		2,946	7	△ 2,946
豫 備 費	216	1	434	1	△ 218	

國道費補助事業

(單位:千圓)

區分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				
			計	國費	道費	郡費	住民負擔
합계	국비		10,714,899	4,733,675	1,218,729	2,103,022	2658,473
사회복지비 회비조	소계		1,329,726	989,776	130,205	185,935	23,810
	.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60명	22,399	17,919	2,240	2,240	
	.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명	19,378	13,462	-	5,916	
	.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433가구	898,923	719,139	89,892	89,892	
	. 장애인 의료비	25명	510	408	102	-	
	. 장애인 보장구 교부	6	1,200	960	-	240	
	. 보건소 일반장비	1개소	20,000	13,333	-	6,667	
	. 보건지소 장비보강	미탄1개소	1,500	1,000	-	500	
	. 보건지소 열구전색용 광선조사기	"	800	533	-	267	
	. 공중보건외사 진료활동비	22명	7,920	7,920	-	-	
	.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22명	652	652	-	-	
	.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88명	364	146	-	218	
	. 노령수당 지원	693명	124,740	87,318	-	37,422	
	. '94노인건강진단 사업비 지원	428명	3,019	2,415	-	604	
	. '94 경로당 운영비지원	21개소	5,040	3,528	-	1,512	
	. '94 경로당 난방비지원	21개소	2,625	1,838	-	787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	44명	8,635	6,908	864	863	
	.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3개소	208,871	111,037	37,012	37,012	23,810
	.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5가구	950	760	95	95	
	. 사회복지사업기금 (부녀복지부문)-동거부부	5	200	100	-	100	
.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	1	2,000	400	-	1,600		

(單位:千圓)

區 分	事 業 名	事 業 量	事 業 費				
			計	國 費	道 費	郡 費	住 民 負 擔
산 경 보 업 계 비 조	소 계		9,310,861	3,705,590	1,079,557	1,890,051	2635,663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8개위원회	8,000	4,000	-	4,000	
	· 농어민 자녀장학금지원	347명	130,214	43,460	43,377	43,377	
	·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지하수) ✓	2개소	50,000	30,000	-	20,000	
	· 경지정리사업 ('94봄마무리)	56ha	782,351	434,332	89,936	258,083	
	· 경지정리사업 ('94가을작수)	60ha	272,037	228,956	43,081	-	
	· 밭기반 정비	40ha	1,246,700	748,020	249,340	249,340	
	· 농어촌 가로등 설치	62등	15,500	7,750	-	7,750	
	· 공동방계	440ha	12,100	6,050	1,815	4,235	
	· 방계기대	10대	3,330	999	300	699	1,332
	· 방 계 복	340착	7,480	2,992	898	2,094	1,496
	· 기계화 전업농 육성	60	1,342,800	201,420	60,426	140,994	939,960
	· 기계화 영농단 조성	10	188,300	47,075	14,122	32,953	94,150
	·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328	323,116	161,558	48,467	113,091	-
	· '94 석회질 비료공급	2,188	107,190	24,713	-	24,713	57,764
	· '94 규산질 비료공급	244	13,664	3,416	-	3,416	6,832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75023매	93,119	18,625	5,587	13,038	55,869
	·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4개소	1,660,000	415,000	166,000	249,000	830,000
	· 조사료 생산기반개선 (목장도로 건설)	1km(1개소)	100,000	70,000	10,000	10,000	10,000
	· 닭이작 사료작물 재배	165ha	13,530	2,706	812	1,894	8,118
	· 폐석유실 방지사업	2개소	71,429	50,000	-	-	21,429
	· 임업협동조합 육성	1개조합	6,000	3,000	-	3,000	
	· 등력펌프	1대	4,500	1,350	945	2,205	
· 방화복	3착	120	36	25	59		
· 산불진화 급식비	470명	1,176	588	176	412		
· 수간주사	2,500ha	662,350	402,500	137,955	121,895		
· 지면약제살포	60ha	13,853	6,153	2,310	5,390		

(單位:千圓)

區分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				
			計	國費	道費	郡費	住民負擔
	· 비료주기(항공)	1,500ha	40,710	13,680	8,109	18,921	
	· 피해목 벌채	900ha	304,290	144,900	47,817	111,573	
	· 동력전공기	20	9,520	4,760	1,428	3,332	
	· 약제 투입기	140ha	4,200	2,100	630	1,470	
	· 지효성 지상방제 (흰불나방)	30ha	2,036	-	611	1,425	
	· 예찰조사 사업	2명	16,100	4,830	3,381	7,889	
	· 보호구 표지판	1개	45	23	-	22	
	· 보호구 경계표지판	13개	143	72	-	71	
	· 보호수 의과수술	3본	7,500	675	2,054	4,771	
	· 장기수 묘목대보조	550	206,903	-	15,849	36,983	154,071
	· 장기수 정리비보조	534	338,738	189,693	24,389	56,908	67,748
	· 장기수 식재비보조	248	118,187	66,185	8,510	19,855	23,637
	· 속성수 조림	14	6,089	-	339	791	4,959
	· 대묘조림	2	11,805	6,135	1,701	3,969	
	· 환경조림	4	23,610	7,083	4,958	11,569	
	· 맹아갱신	5	3,185	1,623	295	687	580
	· 비료주기 사업	318	67,209	-	1,731	4,040	61,438
	· 풀베기 사업	1,081	221,692	66,508	19,952	46,555	88,677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658	430,531	129,159	38,748	90,412	172,212
	· 명굴제거 사업	200	26,948	14,065	2,358	5,502	5,023
	· 천연림 보육사업	142	94,667	37,867	11,360	26,507	18,933
	· 보조간벌사업	90	45,900	18,360	5,508	12,852	9,180
	· 산지사방	1	1,817			1,817	
	· 야계사방	2	15,575			15,575	
	· 임도시설 보수	2	5,748	2,874	690	1,609	575
	· 사방지 추비	1ha	363	254	76	33	
	· 가로수 식재	200	12,034	603	2,407	9,024	
	· 무궁화 식재	3.7천본	6,155	131	1,084	4,940	
	· 농업경영 개선지도	9	648	324	-	324	
	·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140	780	390	-	390	

(單位:千圓)

區分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				
			計	國費	道費	郡費	住民負擔
	· 수입개방대응 년중기술교육	500	1,560	780	-	780	
	· 농민학습단체 연찬	7	3,780	1,890	-	1,890	
	· 농촌지도자 육성	1	3,000	1,500	-	1,500	
	· 청소년 과제교육	80	452	226	-	226	
	· 시범농장 입주	4	398	199	-	199	
	·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45	2,164	1,082	-	1,082	
	· 4-H 후원 단체지원	1	1,000	500	-	500	
	· 농민상담소 운영	7	4,200	2,100	-	2,100	
	· 지도소 청사증축	1	127,854	63,927	-	63,927	
	· 지도장비 지원(이륜차)	3	2,196	1,098	-	1,098	
	· 식량생산 기술지도	3	3,870	1,935	-	1,935	
	· 축산폐수 정화시설	2	8,400	3,360	-	3,360	1,680
지개발비조	· 소 계		3,831	3,831			
	· 절도구역 관리	150km	3,831	3,831	-	-	
문화및체조	· 소 계		66,670	33,335	8,167	25,168	
	· 어린이 체능교실	1개소	5,200	2,600	1,300	1,300	
	·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1개소	4,720	2,360	1,180	1,180	
	·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1개소	4,600	2,300	1,150	1,150	
	· 가족생활 체육 캠프	1개소	3,600	1,800	900	900	
	·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명	8,400	4,200	2,100	2,100	
	· 지방문화원 육성	1개문화원	30,000	15,000	-	15,000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개소	4,000	2,000	-	2,000	
	· 생활체육 교실 운영	5개소	6,150	3,075	1,537	1,538	
민방위비조	· 소 계		3,811	1,143	800	1,868	
	· 지경교육장 유지비	15	541	162	113	266	
	· 풍리대장 교육비	183	390	117	82	191	
	· 민방위 감사수당	120	2,880	864	605	1,411	

(單位:千원)

區 分	事 業 名	事 業 量	事 業 費					
			計	國 費	道 費	郡 費	住民負擔	
합 계	도 비		4,752,918		1,882,249	2,143,438	727,231	
일 행 보	반 비 조	소 계	1,210,167		435,023	775,144		
		'94 농어촌마을길포장 사업	13.6km	1,155,000		406,000	749,000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 금	25명	13,760		6,880	6,880	
		옥외광고물 정비		2,880		2,880		
		국민학교 학생급식지원	4개교 1,394명	38,527		19,263	19,264	
사 복 보	회 비 조	소 계	212,486		16,230	196,256		
		노인교동비 지원	4,646명	145,966			145,966	
		'94 노임취로사업	3,196명	65,020		15,480	49,540	
		재가복지 서비스사업	3명	1,500		750	750	
산 경 보	업 비 조	소 계	1,717,265		404,596	585,438	727,231	
		대형 비닐하우스	130동	65,000	-	13,000	13,000	39,000
		개량마스크	4500개	2,160	-	648	1,512	-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1개소	10,000	-	-	10,000	
		마을공동개량 저장고	1개소	35,000	-	14,000	14,000	7,000
		소규모양축농가 축산 폐수 정화시설	7개소	28,000	-	8,400	8,400	11,200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1개소	42,700	-	20,000	10,000	12,700
		한우종합대책	8개소	667,921		46,705	46,705	150,345 424,166 (주, 용)
		재래풍밀용기 구입	300개	1,800	-	360	360	1,080
		젖소능력 배가마을육성		9,000	-	2,700	2,700	3,600
		젖소혈중 개량조사	160두	6,960	-	1,740	3,480	1,740
		젖소능력 배가마을육성 (산유능력조사)	200두	3,000	-	900	900	1,200
		어도시설	2개소	22,000	-	4,400	17,600	-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	288개소	59,384	-	17,815	41,569	-
	산불유급감시원	80명	108,000	-	12,598	95,402	-	

(單位:千圓)

區分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				
			計	國費	道費	郡費	住民負擔
	· 냉해우심농가 위로금 지급	819농가	108,000		54,000	54,000	
	· '93냉해지구 벼종자공급	75ha	121,360		36,440	84,920	
	· '93냉해지구 비료공급	1,464	258,300		129,150	129,150	
	· U.R 대응지원사업	3건	158,000		36,400	46,400	75,200
	· 농민건강관리실 운영	1개소	1,200		600	600	
	·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 지역 활동보상	1개소	480		240	240	
	· 지역농업 소득원개발 사업	1개소	5,000		2,500	2,500	
	· 농촌여성 일감갓기	1개소	4,000		2,000	2,000	
지개발 비조	소 계		1,113,000		526,400	586,600	
	· 부업개발사업	352가구	352,000	-	183,040	168,960	
	· 화장실개발사업	276동	138,000	-	71,760	66,240	
	· 취락구조개선	1개소	80,000	-	48,000	32,000	
	· 도시지역 도로망개선 기반시설 확충	764m	400,000	-	200,000	200,000	
	·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1개소 800m	143,000	-	23,600	119,400	
문화 및 체육 비조	소 계		500,000		500,000		
	· 종합문화회관 건립	1개소	500,000	-	500,000		

地 方 讓 與 金 事 業

(單位:千圓)

事 業 名	事 業 費			
	計	讓 與 金	道 費	郡 費
計	6,300,781	4,411,709	304,815	1,584,257
· 정주권개발사업	1,220,101	854,071	183,015	183,015
· 오지개발사업	811,997	568,397	121,800	121,800
· 군도정비사업	3,196,793	2,237,755	-	959,038
·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046,586	732,610	-	313,976
· 청소년 육성사업	3,876	3,876	-	-
· 하수도 정비사업	21,428	15,000	-	6,428

郡 自 體 事 業

(單位:千원)

事 業 名	事 業 量	事 業 費	備 考
計	28件	1,175,000	
평 창 읍	4건	175,000	
· 상리교량가설	30m	50,000	의정사업 계속사업
· 임하 간이상수도시설	1식	15,000	
· 상리 농로포장	200m	10,000	
· 임하교량가설	L=135m	100,000	
미 탄 면	7건	160,000	
· 회동2리 간이상수도 시설	1식	23,000	의정사업
· 평안1리 소교량가설	11m	27,000	"
· 백운 도수로 시설	300m	30,000	지역균형개발사업
· 창1리(둔너미) 농로포장	300m	25,000	"
· 한탄리(고마루) 농로포장	300m	25,000	"
· 회동1리 간이상수도 시설	1식	30,000	"
방 립 면	3건	150,000	
· 방림5리 도수로	200m	40,000	의정사업
· 교량마무리	2개소	10,000	"
· 계촌 교량	L=40m 상판3경간	100,000	계속사업

(單位:千圓)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	備考
대화면	3건	90,000	
· 상안미3리 제방	100m	20,000	의정사업
· 대화우회도로 가로등설치	30등	30,000	"
· 상안미2리 도수로 보수	4,000m	40,000	지역균형개발사업
봉평면	3건	150,000	
· 진조리(용포동)소교량가설	30m	30,000	의정사업
· 덕거2리 소교량 난간공사	20m	20,000	"
· 봉평 도움정비사업	1식	100,000	계속사업
용평면	3건	150,000	
· 속사천 제방	65m	30,000	의정사업
· 장평시가지 하수도정비	1,000m	20,000	"
· 용전시가지 정비사업	보도1,000m	100,000	지역균형개발사업
진부면	2건	150,000	
· 진부시가지 골목길포장	500m	50,000	의정사업
· 진부교수부지	1식	100,000	지역균형개발사업
도암면		150,000	
· 차항1리 마을안길포장	250m	25,000	의정사업
· 병내리 교량가설	20m	25,000	"
· 횡계교량가설	70m	100,000	계속사업

社 會 團 體 補 助 金

社 會 團 體 別	計	定 額	任 意	備 考
計	212, 600	112, 600	100,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 평창군지부 . 군지도자 협의회 . 군 부녀지도자협의회 	35, 600	35, 600		
. 읍면지도자 협의회	9, 600	9, 600		
. 읍면 부녀지도자 협의회	9, 600	9, 600		
.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15, 400	15, 400		
.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13, 600	13, 600		
.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부	12, 100	12, 100		
. 대한노인회 평창군지부	6, 000	6, 000		
. 평창문화원	8, 300	8, 300		
. 평창군체육회	2, 400	2, 400		
. 풀보조금	100, 000	-	100, 000	

□ 지방채무현황

구분			발행 년도	계무 원금	금부상환소요			년도별상환계획													
유형	회계	사업별			계	원금	이자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후	
1. 지방채차입금				11,924	16,519	10,596	5,923	839	2,613	1,084	1,394	1,372	1,349	1,296	1,273	1,140	995	806	810	1,548	
· 일반회계				5,194	6,052	4,879	1,173	198	2,019	328	540	520	497	457	439	416	272	68	65	233	
· 미탄면청사신축			86	92	50	46	4		11	10	10	10	9								
· 용평면청사신축			87	92	50	46	4		11	10	10	10	9								
· 경창읍청사신축			88	220	173	154	19		22	22	22	22	22	22	22	19					
· 방림면청사신축			89	120	109	96	13		15	15	14	14	13	13	13	12					
· 봉평면청사신축			90	120	128	109	20	15	15	15	15	14	14	13	13	14					
· 군청사증축			92	300	368	300	68		9	39	38	37	36	35	35	34	35	35	35	35	
· 경창하수도시설			87~89	271	382	271	110	9	16	20	20	20	20	18	18	17	18	17	14	175	
· 봉평상수도시설			85	196	89	74	15	25	28	36											
· 용평상수도시설			88~89	183	268	183	85	9	17	21	21	20	19	19	18	17	17	16	16	58	
· 송경택지개발			90	300	324	300	24		324												
· 송경택지개발			92	2,000	2,700	2,000	700	140	140	140	390	373	355	337	320	303	202				
· 수해복구사업			92	1,300	1,411	1,300	111		1,411												
· 특별회계				6,730	10,467	5,717	4,750	641	594	756	854	852	852	839	834	724	723	738	745	1,315	
· 상수도특별회계			82~93	2,896	4,111	2,637	1,474	203	138	290	290	290	290	290	280	290	289	287	290	884	
· 주택사업특별회계			77~86	3,197	5,386	2,705	2,681	371	377	388	395	403	415	413	426	427	434	451	455	431	
· 농공지구특별회계			91	467	759	205	554	47	47	47	140	131	121	112	114						
· 경창하수도시설			88~91	170	211	170	41	20	32	31	29	28	26	24	14	7					

'94 관 서 당 경 비 현 황

□ 예산편성기준

○ 경비의 성격 : 각 관서별 공통적이고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 사무비

○ 적용대상

- .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
- . 부서(실과) 운영 관서당경비
- . 읍면 표준경비

○ 편성방법 : 5등급으로 구분

등 급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배분비율	10%	10%	25%	30%	25%	10%
실과분포	18실과	3	4	5	4	2
읍 면	8	-	평창 진부	대화 도암	봉평 용평	방림 미탄

※ 의회사무과는 예산편성지침상 1등급 적용

○ 계상방법 : 전체관서당 경비의 95% 실과 배분 계상
전체관서당 경비의 5% 예산부서 "풀" 계상

○ 관서당 경비의 종류 및 계상기준

1. 일.숙직 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일 직	1일당	5,000원	66일
숙 직	1야당	5,000원	365일

※ 계상부서 : 내무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분뇨종말처리장)
읍면, 출장소

2. 자체교육수당

- 특별장사급 : 1시간당 50,000원 x50/100 계상
- 교수 급 : 1시간당 35,000원 x50/100 계상

3. 야간근무자 급식비

적용인원	적용단가	적용일수	비고
실과인원	4,000원	월20일	근무실적감안 5등급으로 조정

4. 휴일근무자 급식비

적용인원	적용단가	적용일수	비고
실과인원	4,000원	년20일	근무실적감안 5등급으로 조정

5. 기본업무 추진여비

적용인원	적용기준액	적용일수	비고
실과정원	월 35,000원	12월	

6. 지도, 감독여비

- 기본업무 추진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보완적으로 적용

도 관 내		군 관 내		비고
숙박	비숙박	숙박	비숙박	
24,700	16,400	-	6,500	5등급으로 조정

7. 당직침구 구입비

침 구 구 입		세 탁		비 고
구 입 비	회 수	세 탁 료	회 수	
19,720	년2회	3,000	주1회	

8. 관보 및 법령 추록대

- 법무관리 수용비에 일괄계상

9. 기본사무용품비

적 용 인 원	기 준 액	비 고
정규직 실근무 인원수	년 12,000원	

10. 기타 수용비

- 대상경비 :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구구입비
- 기 준 : 5등급으로 조정

11.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단위:년,천원)

군 수	부군수	읍 장	면 장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
11,000	5,400	3,600	2,400	2,000	2,000

1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성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 기준액 : 실적별 연 540천원

13. 자산취득비

적용인원	기준액	비고
정규직 정원	년 10,000원	

□ 등급화 경비의 배분

○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 배분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실과.음면수	24	3	6	7	6	4
근무인원(1일)	15	5	4	3	2	2
적용일수(년)	240	240	240	240	240	240
적용단가(원)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실과배분액(천원)	14,400	4,800	3,840	2,880	1,920	1,920
총액	76,800	14,400	23,040	20,160	11,520	7,680

○ 지도. 감독여비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실과.음면수	24	3	6	7	6	4
출장인원(월)	75	4	4	3	2	2
회수	12	12	12	12	12	12
적용단가(원)	74,100 24,000x3일	74,100	74,100	74,100	74,100	74,100
실과배분액(천원)	-	3,556	3,556	2,667	1,778	1,778
총액	68,453	10,668	21,336	18,669	10,668	7,112

○ 기타수용비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실과.음면수	24	3	6	7	6	4
실과배분액	-	5,000	3,000	3,000	2,000	2,000
총액	74,000 (79,906)	15,000	18,000	21,000	12,000	8,000

※ 잔액 5,906천원 = 특별수요 부서 충족(기획, 내부)

□ 관서당 경비의 판단

○ 관서당 경비 계상 한도액 (A)	_____	653, 000천 원
○ 기관공통 관서당 경비 (B)	_____	32, 650 "
○ 기준화 경비 (C)	_____	395, 191 "
. 일속직 수당	_____	71, 650 "
. 자체교육수당	_____	-
. 기본업무 추진여비	_____	255, 780 "
. 당직실 침구구입비	_____	2, 983 "
. 기본 사무용품비	_____	6, 648 "
.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_____	40, 800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_____	11, 340 "
. 자산취득비	_____	5, 990 "
○ 등급화 경비 (A - B + C)	_____	225, 159 "
. 휴일. 야간근무자 급식	_____	76, 800 "
. 지도. 감독여비	_____	68, 453 "
. 기타 수용비	_____	79, 906 "

○ 관서당경비 예산액

(단위:천원)

실과명	계	일속직수담	야간무자식담	기본업무추여비	지감도독여비	당직구입비	기사무용품	기타수용비	기관공통영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	자산취득비
계	620,350	71,650	76,800	255,780	68,453	2,983	6,648	79,906	40,800	11,340	5,990
기획실	19,240		3,840	5,040	3,556		144	6,000		540	120
문화공보실	9,786		1,920	3,360	1,778		108	2,000		540	80
내무과	62,653	15,190	4,800	13,440	3,556	223	288	7,906	16,400	540	310
사회진흥과	13,937		2,880	4,620	2,667		120	3,000		540	110
재무과	29,588		4,800	15,120	3,556		252	5,000		540	320
사회과	10,658		1,920	4,200	1,778		120	2,000		540	100
환경보호과	21,873	4,300	2,880	7,980	2,667	184	132	3,000		540	190
가정복지과	9,332		1,920	2,940	1,778		84	2,000		540	70
산업과	17,048		3,840	5,880	3,556		132	3,000		540	100
지역경제과	10,646		1,920	4,200	1,778		108	2,000		540	100
축산과	10,216		1,920	3,780	1,778		108	2,000		540	90
산림과	14,391		2,880	5,040	2,667		144	3,000		540	120
건설과	17,102		3,840	5,880	3,556		156	3,000		540	130
도시과	16,240		3,840	5,040	3,556		144	3,000		540	120
민방위과	10,216		1,920	3,780	1,778		108	2,000		540	90
의회사무과	19,274		4,800	4,620	3,556		108	5,000		1,080	110
보건의료원	42,949	4,380	2,880	25,620	2,667	184	528	3,000	2,000	1,080	610
농촌지도소	35,639	4,380	2,880	18,480	2,667	184	528	3,000	2,000	1,080	440
평창읍	38,852	4,340	3,840	19,320	3,556	184	552	3,000	3,600		460
미탄면	24,556	4,340	1,920	11,340	1,778	184	324	2,000	2,400		270
방림면	21,164	4,340	1,680	8,820	1,778	184	252	1,500	2,400		210
대화면	30,941	4,340	2,880	14,700	2,667	184	420	3,000	2,400		350
봉평면	24,258	4,340	1,680	11,760	1,778	184	336	1,500	2,400		280
용평면	25,882	4,340	1,920	12,600	1,778	184	360	2,000	2,400		300
진부면	34,802	4,340	3,600	17,220	3,556	184	492	2,600	2,400		410
도암면	28,975	4,340	2,640	13,440	2,667	184	384	2,600	2,400		320
계촌출장소	6,188	2,170	240	2,940		184	84	500			70
면은출장소	5,304	2,170	240	2,100		184	60	500			50
수항출장소	4,320	2,170	240	1,260		184	36	400			30
유천출장소	4,320	2,170	240	1,260		184	36	400			30

□ 관서당 경비 실적등급 조정(안)

실 과 명	공 무 원 수				전 년 등 급		등 급 조 정	
	정 원			실과별근무				
	계	지방	국가	정규직인원	순 위	등 급	순 위	등 급
계	334	271	63	278	순 위	등 급	순 위	등 급
기 획 실	12	12		12	6	2		2
문화공보실	8	8		7	13	4		4
내 무 과	32	31	1	24	2	1		1
사회진흥과	11	11		10	7	2		3
재 무 과	36	32	4	21	4	2		1
사 회 과	10	10		10	16	4		4
환경보호과	19	19		11	17	5		3
가정복지과	7	7		7	18	5		5
산 업 과	14	10	4	14	8	3		2
지역경제과	10	10		9	9	3		5
축 산 과	9	9		9	14	4		4
산 림 과	13	3	10	13	10	3		3
건 설 과	14	13	1	13	11	3		2
도 시 과	12	12		12	15	4		2
민방위 과	7	5	2	7	12	3		4
의회사무과	11	11		11	1	1		1
보건의료원	61	61		44	3	1		3
농촌지도소	48	7	41	44(35)	5	2		3

※ 실적별 우선순위기재(1~18)

관서당경비 실적등급 조정관

실과장

성 명

인

議 會 關 聯 經 費

(單位:千圓)

豫 算 科 目		'93 豫 算		'94 豫 算		議 員 1 人 當 基 準		
		年 額	月 額	年 額	月 額	年 額	月 額	
合 計		77,900	6,491	113,216	9,434	2,700	225	
議 會	計	62,400	5,200	80,400	6,700	2,700	225	
	개 別	小 計	21,600	1,800	21,600	1,800	2,700	225
		의원일비	14,400	1,200	14,400	1,200	1,800	150
		회의참석여비	7,200	600	7,200	600	900	75
	공 통	小 計	40,800	3,400	58,800	4,900		
		의원활동비	11,200	933	11,200	933		
		기타경비	8,000	667	8,000	667		
		업무추진비	9,600	800	9,600	800		
		업무추진비 외정활동보상	12,000	1,000	12,000	1,000		
		18,000		18,000	1,500	✓		
議 會 事 務 課	計	15,500	1,291	32,816	2,734			
	공 통	小 計	7,500	625	16,000	1,333		
		특수활동비 (사무과)	7,500	625	10,000	833		
		특수활동비 (전문위원실)	-	-	6,000	500		
	사 무 과	小 計	8,000	666	13,216	1,101		
		여비(관서당) 일반여비	8,000	666	8,176	681		
	전 문 위 원 실	小 計	-	-	3,600	300		
		일반여비	-	-	3,600	300		

業務推進費 및 特殊活動費

○ 豫算編成基準

- 定 額 : 豫算編成指針上의 定額計上
- 特定施策 : 特定施策 推進經費 基準額 計上

(單位:千원)

區 分	人員數	計		機關共通業務 推 進 費 (官署當經費)	定 額		特 定 施 策	
		年 額	月 額		業務推進	特殊活動	業務推進	特殊活動
計	95	303,580	-	52,140	66,440	17,000	42,000	126,000
군 수	1	164,700	13,725	11,000	8,300	11,000	33,600	100,800
부 군 수	1	47,400	3,950	5,400	2,400	6,000	8,400	25,200
지도소장	1	4,400	366	2,000	2,400		※계상 과목 ↓ 일반행정	※계상 과목 ↓ 일반행정
의료원장	1	4,400	366	2,000	2,400		읍면행정 지 도	읍면행정 지 도
실과장	20	24,000 (1,200)	- (100)	10,800 (540)	13,200 (660)			
진료부장	1	1,200	100	540	660			
예비군 중대장	1	540	45	-	540			
읍 장	1	4,800	400	3,600	1,200			
면 장	7	25,200 (3,600)	- (300)	16,800 (2,400)	8,400 (1,200)			
부 읍 장	1	660	55	-	660			
부 면 장	7	3,360 (480)	- (40)	-	3,360 (480)			
출장소장	4	1,920 (480)	- (40)	-	1,920 (480)			
예산담당	4	2,400 (600)	- (50)		2,400 (600)			
감사담당	3	1,800 (600)	- (50)		1,800 (600)			
세무담당 · 군	42 7	4,200 (600)	- (50)		4,200 (600)			
· 읍면	35	12,600 (360)	- (30)		12,600 (360)			

※ () 1人當 基準額임

문서번호 예산 13310 - 590
 시행일자 1993. 11. 10. (3)

수신 평창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

선결			지	
접	일자	93. 11. 11	시	
수	시각		결	
	번호	12400	재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제목 '94 특정시책 추진경비 및 군의 포괄사업비 연간 기준액 시달

1. 예산 13310 - 450('93. 9. 1)호의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시달」과 관련임.

2. '94년도 시군별 「특정시책 추진경비」 기준액과 군의 「포괄사업비」 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기준액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가. 특정시책 추진 경비 기준액

(단위: 백만원)

단체명	적용등급	연 간 기 준 액			비 고
		계	특수활동비 (203 목)	업무추진비 (204 목)	
평창군	나	168	126	42	

- 특정시책 추진 경비를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시기에 편중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월별로 안배하여 균형있게 집행되도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별 균형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최소한 분기별 균형 유지는 반드시 지켜 지도를 할 것이며 본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니 철저히 준수 하기 바람
- 도단위이상 행사, 관광지, 대단위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특수수요가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신청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시군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 승인할 방침이니 참고하기 바람.

나. 군의 포괄사업비 연간기준액

○ 군의 포괄사업비 연간 기준액은 특수시책추진경비의 적용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 ① 가등급의 군은 300백만원
- ② 나등급의 군은 270백만원
- ③ 다등급의 군은 240백만원
- ④ 라등급의 군은 200백만원 범위내에서 계상토록 할것

강 원 도 지

